

2025년종로구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2026년 종로구 장애인 자립생활 권리보장 및 예산 요구안

공동주관

노들장애인야학,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서울시장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사)장애인이동권연대
종로지회,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서울지부
종로장애인자립생활센터,조선(동)독립투쟁단

참여단체: 고전비평공간 규문,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역지부 서울대병원분회),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416연대
종로구 정책 제안 및 예산 요구안

(1) 장애인 노동권 보장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개정	5
	2. 2026년 종로구형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10개 신규 추진	12
(2) 장애인 자립생활 권리 보장	3. 사각지대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24시간 구비 추가 지원 확대	14
	4. 만 65세 이상 고령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자치구 추가 지원	16
	5.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 확대	17
	6. 불공정한 주민세(종업원분) 해결방안 마련	19
(3) 장애인 평생교육권 보장	7. 2026년도 종로구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계속 지원 및 예산 증액	24
	8. 「학교형태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매뉴얼」 이행 및 운영비 지원	27
	9. 「종로구 장애인평생교육 지원 조례」 제정	32
(4) 장애인 이동권 및 접근권 보장	10. 종로구 마을버스 전면 저상버스 도입을 위한 저상버스 예외노선 대상 도로 개선·계획 연내 수립	35
	11.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조례 전면개정	37
	12.종로구 관내 거주차 우선주차 구역 장애인기관 및 단체 우선배정 조례개정	39
	13. 관내 휠체어 이용 인도 확보	40
(5) 장애인 탈시설 권리보장	14. 종로구 장애인 탈시설 지원 조례 제정	42
	15. 종로구 관내 장애인 자립 공간 확보	44
6) 장애여성 지원체계마련	16. 종로구 장애여성의 성과 재생산권리 보장	46
	17. 종로구 젠더기반 폭력피해 장애여성 지원정책 마련	47

2026년 장애인권리 예산 요구

(단위 : 천원)

요 구 안		2025년 (지원 예산)	2026년 (추가 요구 예산)
1. 종로구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10개 신규 추진	노동자 인건비		136,258
	전담인력 인건비		63,583
2.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구비 추가	24시간 지원	-	398,880
	월 100시간 지원	-	997,200
3. 만 65세 이상 탈시설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추가 지원		-	149,580
4.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 확대	기존 공간	70,323	78,447
	신규 공간	10,632	49,659
5. 종로구 장애인평생교육기관에 대 한 운영비 및 교육비	2층 · 4층 임대료	24,000	36,000
	급식비	-	20,000
7. 종로구 장애인평생학습도시 예산 확대(중앙구 매칭)		120,000	160,000
2026년 증액 요구안 예산 합계			2,089,607

2025년 종로구 장애인정책 예산 분석

장애인자립생활 관련 예산					(단위: 천원)	
부서	정책	세부단위	2025년	비율	2024년	기타
종로구청(일반회계) 전체예산			540,366,255	100%	498,961,927	▼41,404,328 (8.30%)
사회복지과 전체예산			71,208,248 구비 12,923,822	100% 구 18.1%	64,974,194	▼6,234,054
사 회 복 지 과	장 애 인 복 지 증 진	종로장애인복지관 지원	2,293,235 구비 796,392	3.2% 구 34.72%	2,207,531	▼85,704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	118,955	0.16%	118,955	동결 민간위탁 2개소 (노들,인명)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지원	14,400	0.02%	14,400	동결 민간위탁 2호 (노들)
		종로 장애인통합회관 운영	23,260	0.03%	25,260	▲2,000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	709,132 구비 158,281	0.99% 구 22.3%	654,542 구비 133,542	▼54,000

장애인 평생교육관련 예산			(단위: 천원)			
부서	정책	세부단위	2025년	비율	2024년	기타
종로구청 전체예산			540,366,255	100%	535,123,452	▼42,336,587 7.91% 증액
평생교육과 전체예산			5,348,109	100%	3,604,123	▼1,743,986
평 생 교 육 과	평생 학습 체제 구축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272,530	5.11%	149,000	▼123,350
		성인문해교육 지원	20,000	0.37%	15,000	▼500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56,000	1.05%	46,000	▼10,000
		평생교육 지역네트워크 구축	12,560	0.23%	12,320	▼240
		평생학습관 운영	319,544	5.97%	350,540	▲30,996
		동 평생학습센터 운영	43,200	0.81%	40,000	▼3,200
		평생학습 동아리 운영	17,360	0.32%	17,280	▲80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8,190	0.16%	8,190	동결
	인재 양성 지원	종로국제서당 운영	164,428	3.07%	199,431	▲35,003
		종로 청년생활 아카데미	15,500	0.29%	20,500	▲5,000
	공공 도서관 기반 조성	공공도서관 확충 및 운영	4,358,240	81.49%	2,480,845	▼1,877,395
	행정 운영 경비	기본경비(평생교육과)	60,557	1.13%	47,385	▼13,172

1. 장애인 노동권 보장

— 세부 정책요구안 —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개정
2. 2026년 종로구형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10개 신규 추진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개정

□ 현황 및 필요성

- 그동안 중증장애인의 취업 관련 정책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및 「장애인복지법」 등에 따라 다양하게 추진되어 왔으나, 중증장애인의 고용률은 지난 10여년 동안 20% 수준에 그침. 이는 기존 정책이 경증장애인 위주로 진행되어 왔고, 중증장애인의 노동할 능력에 대한 불신이 사회 전반에 확산되어 있기 때문임.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의 「2024년 상반기 장애인경제활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장애인의 고용률은 36.5%로 전체인구의 고용률(66.0%)보다 29.5%p 낮은 수준임. 장애 정도별로 살펴보면, 경증장애인의 고용률이 45.0%인 반면, 중증장애인의 고용률은 22.5%로 경증장애인의 절반 수준에 불과함. 또한, 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38.0%로 전체 인구(68.0%)보다 30.0%p 낮으며, 경증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47.0%, 중증장애인은 24.0%로 나타남. 장애인의 실업률은 4.0%로 전체 인구(3.0%)보다 1.0%p 높으며, 중증장애인(5.0%)의 실업률은 경증장애인(3.5%)보다 1.5%p 높은 수준으로 조사되었고 장애 유형별 고용률을 보면, 지체장애인은 38.0%로 비교적 높은 편이나, 정신적 장애인의 고용률은 20.0%로 낮으며, 발달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8.0%, 고용률은 26.5%로 조사됨.
-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현재 1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지원사업’을 실시 중임.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지원사업은 노동시장에서 배제된 최중증장애인이 권익옹호, 문화예술, 인식개선교육이라는 세 가지 직무를 수행하는 일자리를 통하여 「UN장애인권리협약」을 홍보하는 등 비경제적인 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임.

- UN장애인권리위원회는 대한민국이 장애인을 인권의 주체로 인정하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확대하기 위해 장애인 인식 개선 캠페인을 강화할 것을 권장하였음. 특히, 협약의 내용과 목적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공무원·국회의원·언론·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장애인 권리에 대한 교육을 제공할 것을 권고한 바 있음.
- 동 사업은 ‘중증장애인’에 특화된 일자리를 제공하고,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 전통적인 노동 방식이 아닌 사회적 이익을 창출하는 새로운 노동 방식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과 큰 차이가 있음.
-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이하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UN이 제시한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SDGs) 중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사회(Leave No One Behind)’를 실현하는 데 있어 중요한 실천 사례로 평가됨. 본 사업은 최중증장애인의 노동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장애인의 권리를 실현하고, 비장애인 중심의 사회 구조를 변화시킴.
- 중증장애인의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동 사업과 같은 형태의 일자리사업이 더욱 확대되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는바, 동 사업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사업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확대를 추진하여 중증장애인의 노동할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 2023년 기준, 서울시 중증장애인 맞춤형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사업에 노들야학 18명, 노들센터 12명이 참여하였으며, 이들 대부분은 탈시설을 했거나 탈시설을 앞둔 장애인이었음. 중증·발달장애인들은 UN 장애인권리협약의 홍보 및 이행 모니터링, 자조모임 운영, ‘People First’ 활동, 편의시설 모니터링, 창작연극 및 문화예술 활동 등을 통해 자신의 목소리를 내며, 장애인의 시각에서 사회 변화를 이끄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음.
- 그러나 2024년 서울시는 어떠한 절차나 의견 수렴 없이 「서울형 중증장애인 맞춤형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사업을 폐지함. 이에 따라 종로구에서만 30명의 공공일자리 노동자와 5명의 전담 인력이 해고되었으며, 타 자치구를 포함하면 총 450여 명이 2024년 1월 1일부로 일자리를 잃게 되었고 공공일자리 노동자들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장애인고용공단과 사기업 등에 취업을 시도하였으나, 중증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취업이 거절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였음.
- 2025년 현재,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지원사업’은 전국 1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약 1,400여명의 중증장애인이 참여하고 있음. 본 사업은 노동시장에서 배제된 최중증장애인이 권익 옹호, 문화예술, 인식 개선 교육 등의 직무를 수행하며 UN 장애인권리협약을 홍보하는 등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함. 특히, 경기도는 2021년부터 본 사업을 도입하여 중증장애인의 근로 보장 및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2024년 7월 발표된 『경기도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일자리사업 개선방안』에서도 이를 적극 추진하고 있음.

- 또한, 2024년 12월 23일에는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지원 특별법안』이 발의됨에 따라, 본 사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전국적인 확대를 위한 기반이 조성됨. 이는 중증장애인의 노동권 보장과 사회참여 촉진을 위한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됨. 경기도에서는 2025.1.20. 「경기도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장애인 고용촉진·직업재활지원 조례」를 개정하였고, 안산시, 세종시, 부산시 등에서도 조례제정을 추진 중에 있음.

□ 요구사항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개정

[표. 조례개정 예시]

	경기도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장애인 고용촉진·직업재활 지원 조례 (개정완료) 2025.1.20.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개정 중)	안산시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조례 (개정 중)
(정의)	8.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란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중증장애인 등을 고용하여, UN이 정한「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대하여 홍보·이행을 촉구하는 장애인 인식개선, 문화·예술활성화, 권리옹호를 추구하는 캠페인 일자리를 말한다. [신설 2025.1.20.]	9.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란 세종특별자치시가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가 권고한 바에 따라 공무원, 국회의원, 방송 및 언론, 시민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목적과 내용을 홍보하고 이행을 촉구하는 캠페인 일자리로 중증장애인의 심각한 노동 문제 해결과 노동권 보장을 위해 노동 능력이 현저히 낮은 중증장애인을 우선 고용하여, 장애인 인식개선, 문화·예술, 권리옹호 직무를 수행하는 캠페인 일자리를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 중 노동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사람으로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장애인 일자리 창출”이란 장애인의 직업능력을 향상시키고 장애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4. “고용촉진”이란 장애인고용을 권장하고 그들의 직업생활과 직업안정을 도모하도록 권장하는 것을 말한다. 5.“공공기관”이란 안산시(이하“시”라 한다)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하거나 설치한 지방공사와 안산시 출자·출연기

	경기도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장애인 고용촉진·직업재활 지원 조례 (개정완료) 2025.1.20.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개정 중)	안산시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조례 (개정 중)
			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을 말한다 6. 권리중심주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란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이 중증장애인 등을 고용하여 UN이 정한"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대하여 홍보 이행을 촉구하는 장애인 인식개선·문화예술활성화, 권리옹호를 추구하는 캠페인 일자리를 말한다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 지원	제6조의4(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 지원) 도지사는 경제활동을 하지 않거나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중증장애인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1. 위탁기관의 참여자 8명당 1명 기준으로 전담자 인건비 지원 2. 「경기도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제2조제5호에 따른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의 자립생활 프로그램과의 연계 지원 3.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의 평생교육과 연계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본조신설 2025.1.20.]	제12조(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 지원) 도지사는 경제활동을 하지 않거나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중증장애인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1. 위탁기관의 참여자 5명당 1명 기준으로 전담자 인건비 지원 2. 「세종특별자치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제2조제4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의 자립생활 프로그램과의 연계 지원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제6조(공공부문 장애인 일자리 창출) ① 시장은 장애인 공공부문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시 소관 사업에 능력과 적성에 맞는 장애인 고용 2. 민간위탁 사업자 선정 시장장애인가용 비율에 따른 가산점 부여 3. 정상적인 근무환경에서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근무환경 조성 등 보호고용 4. 다음 각 목의 중증장애인 일자리 가. 권리옹호형 일자리 나. 문화·예술형 일자리 다. 인식개선형 일자리 ② 시장은 시 및 산하기관에 중증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 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개정 2021.1.8.>) ① 도지사는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하여 사업주 및 도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홍보 및 장애인 고용촉진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현행과 같음) 1. ~ 7. (현행과 같음) 8. <u>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 지원에 관한 사항</u> 9. (현행 제8호와 같음) ③·④·⑤ (현행과 같음)	제9조(취업 후 적응지도) 시장은 사업장에 고용되어 있는 장애인의 직업안정을 위하여 작업환경 적응에 필요한 지도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의2(직업재활교육)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

	경기도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장애인 고용촉진·직업재활 지원 조례 (개정완료) 2025.1.20.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개정 중)	안산시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조례 (개정 중)
	하여야 한다.<개정 2025.1.20.> ② 도지사는 사업주·장애인, 그 밖의 관계자에 대한 지원과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직업재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하고,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에 대한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중요시하여야 한다.<개정 2013.12.2.> ③ 도지사는 법 제27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 의무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1.1.8.] 제3조의2(일자리 창출 사업 추진계획) ① 도지사는 장애인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발굴·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 일자리 창출 사업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일자리 발굴과 제공에 관한 사항 2. 적성·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위한 장애인의 직업훈련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일자리 참여자의 관리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장애인 고용 의무에 관한 사항 [신설 2021.1.8.]		하는 장애인 직업재활 교육을 할 수 있다. 1. 장애인 취업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개발교육 2. 중증장애인의 고용과 자립지원 촉진을 위한 맞춤형 교육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② 시장은 장애인 직업재활교육을 할 수 있다. 다만, 장애인 직업재활교육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안산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조례 및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의3(권리중심중증장애인 맞춤형공공일자리지원) 시장은 경제활동을 하지 않거나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중증장애인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1. 위탁기관의 참여자 5명당 1명 기준으로 전담자 인건비 지원 2. ”안산시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제2조6호에 따른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의 자립생활 프로그램의 연계지원 3.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의 평생교육과 연계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경기도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장애인 고용촉진·직업재활 지원 조례 (개정완료) 2025.1.20.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개정 중)	안산시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조례 (개정 중)
	6.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5.1.20.] 7. 그 밖에 도지사가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호에서 이동<2025.1.20.>] ③ 도지사는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도내 법인이나 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협조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1.7.]		
		제10조(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 ① (생략) 5. <u>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제공을 위한 사항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u> ㉞ <u>중증장애인 고용 동향 및 수요조사를 포함한 고용관련 지표 제시 등</u> ㉟ <u>중증장애인 구직자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에 관한 사항</u> ㊱ <u>중증장애인 구직자 직업지도 및 취업 알선에 관한 사항</u> ㊲ <u>중증장애인 구직자를 위한 공공일자리에 관한 사항</u> ㊳ <u>중증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u> ㊴ <u>권리중심 공공일자리 확대를 위한 유관기관 간 협업에 관한 사항</u> ㊵ <u>그밖에 중증장애인 고용 촉진 및 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u>	
		제12조(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 지원) 도지사는 경제활동을 하지 않거나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중증장애인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경기도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장애인 고용촉진·직업재활 지원 조례 (개정완료) 2025.1.20.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개정 중)	안산시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조례 (개정 중)
		1. 위탁기관의 참여자 5명당 1 명 기준으로 전담자 인건비 지원 2. 「세종특별자치시 중증장애 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제2조제 4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자립생 활지원센터”의 자립생활 프로그 램과의 연계 지원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지원	

2. 2026년 종로구형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10개 신규 추진

□ 현황 및 필요성

- 2025년 현재 13개 지자체에서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시행 중. 그 중에 춘천시(40명), 제천시(10명), 시흥시(12명), 광주 서구(20명) 4개 기초지자체에서 권리중심노동자 82명에 대하여 전액 (시비, 구비)로 지원하고 있음.
- 종로구청에서도 시장에서 배제된 최종증장애인을 우선적으로 고용하는 권리중심공공일 자리를 신규도입해서 중증장애인의 노동할 권리를 보장하는데 책임져야 할 것임.

□ 관련근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조, 제4조 등
- 「서울특별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조례」 제3조, 제4조 등
-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제8조
- 「서울형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사업 평가체계 연구」
: 평가지표 개발을 위한 현황분석 중심으로 (서울시복지재단-2021-37)
- 「서울특별시 종로구 중증장애인 지원 조례」 제6조 등

□ 요구사항

1. 요구 예산 : 총 199,841천원

구분	내역	요구 예산
참여자 인건비 시간제 (주20시간)	10명 × 1,048,140(월) × 13개월(퇴직금 포함)	136,258천원
전담인력 인건비	전담인력 2명 × 2,445,509(월) × 13개월(퇴직금 포함)	63,583천원
합계		199,841,434원

- 종로구형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 10개 신규 추진 ※산출 근거

- 최저시급('25년) : 10,030원
- 월급여 = 최저임금 × (월 근로시간 + 주휴수당 + 월차수당)
 - 월 근로시간 : 4시간 × *20일 =80시간
 - 주휴수당 : 4시간 × 4일 = 16시간
 - 월차수당 : 4시간 × 1일 = 4시간
- *2025년 토,일을 제외한 평일(공휴일포함) 248일 /12개월 = 20.666일 (소수점 반올림)

○ 전담인력 2명 인건비 ※산출 근거

- 월 법정 근로시간(209시간)
- 서울시 생활임금 시급('2025년 기준): 11,779원

2. 장애인 자립생활 권리 보장

— 세부 정책요구안 —

3. 사각지대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구비 추가 지원 확대
4. 만 65세 이상 고령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자치구 추가 지원
5.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 확대
6. 불공정한 주민세(종업원분) 해결방안 마련

3. 사각지대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구비 추가 지원 확대

□ 현황 및 필요성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인에게 일대일 대인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 사회참여, 인권을 증진시키는 제도임. 2022년 장애인의 삶 패널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의 81.1%가 만족한다고 답하였으나, 불만족 사유 중 97.3%는 서비스 제공 시간이 적어서 활동지원사의 지원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고 응답함. 이를 통해 많은 장애인들이 활동지원서비스에 대한 높은 만족도에 비해 지원 시간이 부족해 불만족스러워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예산의 문제로 중앙정부가 24시간 활동지원 시간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자 2015년부터 서울시는 100명의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 추가 지원을 하기 시작함. 2018년 여름, 기록적인 폭염 속에 사지마비 중증장애인 김선심 씨가 생명을 잃을 위기에 처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 신청을 한 사건을 계기로 서울시는 활동지원 추가지원 대상자를 200명으로 확대 지원하고 있음.
- 또한,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구간을 판정하는 척도인 인정조사표는 신체 장애인 중심으로 되어있어 발달·정신 장애인들은 상대적으로 적은 시간을 제공받고 있음. 2022년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나온 장애유형에 따른 활동지원서비스 평균 시간 조사를 살펴봤을 때, 지적 108.1시간, 자폐 112.1시간, 정신 89.4시간에 반해 지체 167.1시간, 뇌병변 169.9시간을 제공받고 있었음.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의 94.8%가 중증장애인임을 감안하면, 발달·정신장애인들은 실제 24시간 지원이 필요함에도 적합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음.

- 서울시 내 일부 자치구에서는 사각지대 장애인들에게 활동지원서비스 추가 지원을 하고 있음. 이에 종로구에 거주하는 24시간 지원이 필요한 사각지대 및 탈시설 장애인의 24시간 활동지원을 요구함.

〈2023년 장애인활동지원사업 구 추가지원 활동지원 현황〉		
지역	대상기준	지원시간
용산구	종합점수 X1(기능제한점수) 360점 이상인 최종증 독거 중증장애인	200
	종합점수 X1(기능제한점수) 360점 이상인 최종증 독거 중증장애인	37
	종합점수 X1(인지행동특성)43점 이상인 18세 이상 성인 발달장애인	30
중랑구	장애인활동지원(국고보조, 시비추가)이용자 중 최종증장애인	150
	장애인활동지원(국고보조, 시비추가)이용자 중 65세이상 최종증장애인	150
	장애인활동지원(국고보조, 시비추가)이용자 중 발달장애인	30
	장애인활동지원(국고보조, 시비추가)이용자 중 취약계층 장애인	20
	장애인활동지원(국고보조, 시비추가)이용자 중 자립생활주택	50
성북구	시비추가지원대상자 중 최종증1인 및 와상사지마비	150
	종합조사점수 X1(기능제한) 점수가 266점 이상 만19세~65세 발달장애인	40
	사각지대 장애인	20

〈종로구 장애인 인구 현황〉			
년도	중증장애인 현황		
	심하지 않은 장애	심한 장애	합계
2022년	3,683	2,151	5,834
2023년	3,602	2,080	5,682 (▼ 152)

□ 관련근거

- 장애인복지법 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55조(활동지원급여 추가지원)
-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요구사항

- 종로구 활동지원서비스 24시간 지원대상 장애인 구비추가 월 200시간 10명 지원 확대
- 종로구 활동지원서비스 사각지대 장애인 구비추가 월 50시간 50명 추가 지원

□ 예산 요구안(2025년도 활동지원 단가기준)

- 종로구 활동지원서비스 월 200시간 10명 지원
- 16,620원×200시간×10명×12개월= 398,880천원

○ 종로구 활동지원서비스 사각지대 장애인 구비추가 월 100시간 50명 지원

- 16,620원×100시간×50명 ×12개월= 997,200천원

4. 만65세 이상 고령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지원 확대

□ 현황 및 필요성

- 서울시는 2020년 6월 전국 최초로 만65세 이상 고령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지원하기 시작하였음. 이는 2020년 하반기 시범사업으로 운영되었으며, 종합조사 X1 점수 360점 이상인 자에 대해 국비 매칭분 50%를 제외한 나머지(시구비 제공시간) 시간만큼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음.
- 서울시의 이러한 선제적인 시도를 뒤이어, 2020년 12월 2일 중앙정부에서는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제5조 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 활동지원급여 수급자가 65세 이후에 혼자서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에는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을 부여함으로써 활동지원 급여 총량 중 일부를 장기요양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보전급여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하지만 서울시의 지원은 만65세 이전 지급하던 급여량을 온전히 제공하지 않고 있으며, 기존 350시간 지원 대상자에 대해서는 200시간을, 200시간 지원 대상자에 대해서는 100시간을 제공하는 등 대폭 삭감하였음.
- 또한 2020년 12월 23일 65세 미만 노인장기요양 수급 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 신청자격 제한 조항이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았으며, 이에 2022년 5월 법률 개정 이후 2023년 1월 1일부터 상기의 방식과 동일한 보전급여 조치를 적용함. 현재 만65세 미만이지만 장기요양을 이용하는 노인성 질환의 장애인들이 종합조사를 통해 활동지원 등급을 판정받고 있음. 하지만 65세 미만의 경우 서울시의 추가지원 기준이 부재하므로 24시간 지원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임.
-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과 법률 개정의 취지에 따라 이들에게도 지자체의 추가지원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자체 예산 확대 및 기준 마련과 적용을 강력히 요구함.

□ **관련근거** : 2022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65세 도래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사업 및 65세 미만 노인성질환자 신규사업

○ **형식** : 장기요양 활동지원 보전급여

- 13년~21년 활동지원 이용하다가 장기요양으로 전환한 사람 중, 장기요양 등급외 제외, 활동지원 60시간 미만 및 시설급여 이용자 제외, 사망자 제외, 장기요양 미이용자 제외 인원
- 만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을 가진 장애인으로 2022년까지 활동지원 수급을 받지 못하다가 2023년부터 신

규사업으로 지원받게 된 사람

- 지원시간 : 보전급여 기준(보전점수 42점 이상을 획득)에 부합한 인원에게 대해 종합조사 결과에 따른 구간별 시간에서 장기요양 시간을 차감한 만큼 활동지원급여로 보전 (국고)
- 복지부 시간만 해당되어 지자체 추가시간 보전 필요함.

□ 요구사항

- 활동지원서비스 만65세 이상 장애인 구비추가 월 150시간 5명 지원 확대

□ 예산 요구안(2025년도 활동지원 단가기준)

- $16,620\text{원} \times 150\text{시간} \times 5\text{명} \times 12\text{개월} = 149,580\text{천원}$

5.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 확대

□ 현황 및 필요성

- 2024년 강남구, 서초구, 중구에 이어 종로구 재정 자립도가 42%임. 종로구 전체 사회복지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 15.8% 증액되었고,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예산은 작년대비 2천 6백여만원에 반해 종로장애인 복지관은 3천 2백만원, 평생교육센터는 4천여만원이 증가함.
-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장애인 복지정책을 변화시키는데 앞장서며 많은 성과를 내고 있음. 또한 최종증 장애인들과 함께하는 공간으로서 자리 잡고자 노력해 오고 있음. 이러한 노력은 지역사회 내 비장애인과 동등한 주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권익옹호, 개별자립지원, 탈시설자립지원, 지역사회 인식개선 활동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전개하며, 긍정적으로 지역사회 개선으로 이어져 왔으나 타 복지 단체에 비해 평가 절하됨.
-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있는 동숭길 유리빌딩 6층의 총 공간은 203.70m²의 공간이지만, 실제로는 36.40m²의 사무 공간과 30.74m²의 프로그램실을 사용하고 있음.
 - 일상적으로 진행되는 중증장애인들이 참여하는 집단 교육 프로그램과 각종 회의 등을 진행하는데 심각한 공간 부족현상이 있었음.
 -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2022년부터 3층에 공간 확장을 하였음. 공간 확장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중증장애를 가진 장애인들의 활동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에 IL센터 내에 공간 접근성 향상은 매우 중

요하며 특히 휠체어 이동 동선의 불편함은 적극적으로 개선 되어야 했음.

- 이는 IL센터가 가져야할 책무이자 지켜내야할 역할로써 인식하며 공간 확장을 강행하게 됨.
- 2025년에 6층과 3층 임대료의 약 70%를 지원받고 있음. 2026년에는 100% 지원을 요청함.
- 또한 3층과 6층의 공간이 매년 5%의 임대료를 인상하기로 되어 있는 상황이라 센터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예산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는 상황임. 이에 노들센터가 지역사회 내에서 중증장애인들과 함께 더욱 더 가치 있는 역할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공간 임대 예산 지원을 요구함.

○ 종로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종로지역에서 장애인자립생활운동을 확장하고 장애인의 권익옹호를 통해 장애인 자립생활운동을 확장하여 지역사회의 변화를 목표로 2025. 2.22. 총회를 통해 활동을 시작함. 이에 종로지역에서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권익옹호를 활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임대료 지원을 요청함.

□ 관련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4장 자립생활의 지원

- 제53조(자립생활지원)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의 자기결정에 의한 자립생활을 위하여 활동지원사의 파견 등 활동지원서비스 또는 장애인보조기구의 제공 그 밖의 각종 편의 및 정보제공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54조(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를 통하여 필요한 각종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 요구사항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 6층 임차료 : 월 임대료+임대료 매년 5% 인상(임대차법의 의한 의무 인상율)
- 3층 임차료 : 월 임대료+임대료 매년 5% 인상(임대차법의 의한 의무 인상율)

(종로장애인자립생활센터)

- 사무실 월 임대료 지원

□ 예산요구안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 유리빌딩 6층 2025년 월임대료 : 6,226천원

2026년 5% 인상분 : 6,537천원

6,537,300원 x 12개월 = 78,447,600원

○ 유리빌딩 3층 2025년 월임대료 : 3,465천원

2026년 5% 인상분 : 3,638천원

3,638,250원 x 12개월 = 43,659,000원

(종로장애인자립생활센터)

○ 사무실 임대료 : 월 임대료 50만원 × 12개월 = 6,000천원

6. 불공정한 주민세(종업원분) 해결 방안 마련

□ 현황 및 필요성

○ 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감면 대상이어야 하나 제외됨.

-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을 운영하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비영리민간단체로 사회복지법인은 아니더라도 주민세(종업원분)「지방세특례제한법 22조」의 제 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등에 근거하여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기관에 해당 된다고 보아 주민세(종업원분) 과세를 면제해 왔음. (2017년 대전지방법원의 승소 판례 등)
- 하지만 활동지원기관도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명시된 ‘장애인활동지원법률’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로 100%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비영리민간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에 열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세(주민세) 대상에 포함됨.
- 장애인 자립생활센터도 장애인의 자립생활환경 정착 보급과 생활지원 서비스 제공 등의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는 비영리민간단체로서 설립목적과 사업내용을 보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않은 사회복지법인이 아닐 뿐 사회복지법인과 다르지 않고, 2017년 대전지방법원의 승소판례와 타 자치구가 감면대상이라고 본 사례 사회복지법인과 다르지 않고, 2017년 대전지방법원의 승소판례와 타 자치구가 감면대상이라고 본 사례 등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에서 규정한 감면 대상이 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과된 세금에 대해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음.

○ ‘조세 평등의 원칙’과 ‘실질과세의 원칙’에도 위반.

- 다른 사회복지시설과 비교했을 때 IL센터 등에 부과된 세금은 ‘조세 평등의 원칙’과 수익사업이 아닌 곳에 종업원분 주민세를 부과하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도 위반됨. 동일한 활동지원사업을 수행하지만 그 운영주체가 ‘사회복지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상황임. 운영법인의 형태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며, 같은 지역에 있는 장애인활동지원기관도 기초지자체에서 임의적인 판단에 따라 과세납부의 대상이 되거나 안 되거나 하는 경우가 발생되고 있음. 서울지역 25개 구 중에서 주민세(종업원분) 납부를 적용하고 있는 구는 관악구, 강서구, 강동구, 은평구, 송파구, 종로구, 성동구, 중랑구 등으로 절반도 되지 않고 있음.

○ 장애인들에게 지원 되어야 할 세금이 과세부과에 사용되는 문제가 발생.

- 결국 국가세금으로 운영하는 사업에 다시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장애인의 복지 사업으로 사용되어야 할 예산이 축소되고 세금으로 세금을 내는 문제의 과세임.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을 설치·운영하는 법인·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단체를 포함한다’는 내용으로 2023. 3. 14.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

- 현재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이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은 행정안전부「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 제22조(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감면)에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활동지원기관 등에 대한 감면’ 신설하여 법률로 명시. 또한 시행령 제10조(사회복지법인등의 면제대상 사업의 범위 등)에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활동지원기관 등에 대한 감면’개정이 논의되어왔고 23년 3월 14일 개정됨.
-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을 감면 대상으로 명확히 명시함으로써 2023년부터는 다시 과세 면제 대상이 되었음.

○ 2020년 1월부터 2022년 12월 일몰 도래 시한까지 세금감면 행정소송 및 헌법소원 진행

- 지난 2022. 12. 29.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사단법인 서울시장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소속 회원센터와 함께 행정소송 및 헌법소원을 진행하기 위해 조세심판을 청구한 상태로, ‘조세 평등의 원칙’, ‘실질과세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포괄위임 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지난 부과분에 대하여 다투고 있음. 그러나 자치구는 과세된 주민세(종업원분)를 미리 내고 이후 승소하면 소급 받으라고 하나, 법률 자문 결과 ‘주민세(종업원분) 관련 납부한 금액은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돌려받기 어려움.’ ‘판례들에 따르면 납부한 금액에 대하여 추후 위헌 결정을 받더라도 이를 취소소송으로 다투지 않은 경우 취소사유로 인정받지 못하여 돌려받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함.’ ‘세무관청이 위헌이면 돌려주겠다고 약속을 한다 하여도 그 약속의 효력은 인정받기 어려움’ 것임.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8다241458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공2022상,234], 대법원 1996. 6. 11. 선고 96누1689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공1996.8.1.(15),2246] 판시사항)
- 따라서,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과세 부과 유예가 되어야 함.

※ 판례 주요내용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8다241458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공2022상,234]

(전략)

[5] 행정상대방이 행정청에 이미 납부한 돈이 민법상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민사소송절차를 따라야 한다. 그러나 그 돈이 행정처분에 근거하여 납부한 것이라면 행정처분이 취소되거나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고 할 수 없다.

[6] 일반적으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하자는 행정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당연무효사유는 아니다.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인정된다고 해서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된다고는 할 수 없고, 이미 취소소송의 제기기간을 경과하여 불가쟁력이 발생한 행정처분에는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미치지 않는다.

[7] 산업화약류 제조·판매·수입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갑 주식회사가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상대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총포화약법’이라 한다) 제58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 제3호에 근거한 회비납부의무의 부존재 확인 및 이미 납부한 회비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협회가 매년 구체적인 회비를 산정·고지하는 처분을 하기 전에 갑 회사가 협회를 상대로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도 없는 회비납부의무의 부존재 확인을 곧바로 구하는 것은 현존하는 권리·법률관계의 확인이 아닌 장래의 권리·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갑 회사의 회비납부의무 부존재 확인청구는 협회가 장래에 갑 회사의 구체적인 회비를 산정·고지할 때 총포화약법 제58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 제3호에 근거한 ‘수입원가 기준 회비’ 부분을 제외해야 한다는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협회로 하여금 특정한 내용으로 회비를 산정·고지할 의무가 있음의 확인을 구하는 것과 같으므로 현행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않는 의무확인소송 또는 예방적 금지소송과 마찬가지로 허용되지 않고, 갑 회사로서는 협회가 매년 구체적인 회비를 산정·고지하는 처분을 하면 그 처분의 효력을 항고소송의 방식으로 다투어야 하며, 한편 갑 회사가 이미 협회에 납부한 수입원가 기준 회비의 근거가 된 협회의 회비납부통지는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이미 제소기간이 지나서 불가쟁력이 발생하였으며, 회비 부과 징수의 근거 규정이 위헌·위법하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하자는 회부납부통지의 취소사유일 뿐 당연무효사유는 아니므로, 갑 회사가 이미 협회에 납부한 회비는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대법원 1996. 6. 11. 선고 96누1689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공1996.8.1.(15),2246]

판시사항

- [1] 위헌 결정 전에 그 법률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는지 여부(소극)
- [2] 헌법불합치결정을 받은 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근거한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니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 [1] 행정청이 법률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한 후에 헌법재판소가 그 법률을 위헌으로 결정하였다면 그 행정처분은 결과적으로 법률의 근거가 없이 행하여진 것과 마찬가지가 되어 하자가 있다고 할 것이나,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하여는 그 하자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명백한 것이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하자는 위 행정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당연무효 사유는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 [2] 과세관청이 구 토지초과이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납세자가 토지를 취득한 날 이전에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에 대한 세금납부 의무를 전소 유자로부터 승계하였다고 보아 토지초과이득세 부과처분을 한 것은 신 토지초과이득세법에 의하면 법령상 근거 없이 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할 것이나, 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조 제5항의 규정이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신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조 제5항으로 개정되기까지는 구 토지초과이득세법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는 취소사유는 될 수 있으나 당연무효 사유라고는 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 요구사항

○ 종로구가 부과한 부당한 주민세(종업원분)에 대한 대안 마련

- 일부 자치구만 2020년 1월부터 2022년 12월 사이 부과한 주민세(종업원분)는 ‘조세 평등의 원칙’과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국가세금으로 운영하는 장애인활동지원사업에 다시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결국 종로구 장애인들에게 지원 되어야 할 세금이 과세 부과에 사용되는 문제가 발생함. 따라서 종로구가 부과한 부당한 주민세(종업원분)에 대한 대안 마련이 시급함. (※ 서울시 세무과 관계자는 보조금 지원을 통해 과세를 지급한 사례 등을 이야기하며 자치구와 상의할 것을 권유함)
- 종로구 세무2과에서 2023년 1월 주민세(종업원분) 추가 고지서 예고장과 고지서 발부하여 정문헌 구청장 면담요청서 공문을 2차례 보냈으나 세무2과 팀장을 통해 면담 할 없다고 유선 답변만 하였음. 권한을 가진 정문헌 구청장은 종로구 장애인의 문제에 책임있게 나서서 문제 해결에 앞장서야 함.

○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과세부과 유예

- 자치구는 과세된 주민세(종업원분)를 미리 내고 이후 승소하면 소급 받으라고 하나, 법률 자문 결과 ‘주민세

(종원분) 관련 납부한 금액은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돌려받기 어려움. ‘판례들에 따르면 납부한 금액에 대하여 추후 위헌 결정을 받더라도 이를 취소소송으로 다투지 않은 경우 취소사유로 인정받지 못하여 돌려받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함.’ ‘세무관청이 위헌이면 돌려주겠다고 확약을 한다 하여도 그 확약의 효력은 인정받기 어려움’ 따라서,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과세 부과 유예가 되어야 함.

□ 주민세(종업원분) 고지서 금액

- 2020년 1월 ~ 2022년 1월 41,184,090원
- 2022년 2월 ~ 2022년 7월 11,571,200원
- 총액 52,755,290원

3. 장애인 평생교육권 보장

— 세부 정책요구안 —

7. 2026년도 종로구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계속 지원 및 예산 증액
8. 「학교형태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매뉴얼」 이행 및 운영비 지원
9. 「종로구 장애인평생교육 지원 조례」 제정

7. 2026년도 종로구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계속 지원 및 예산 증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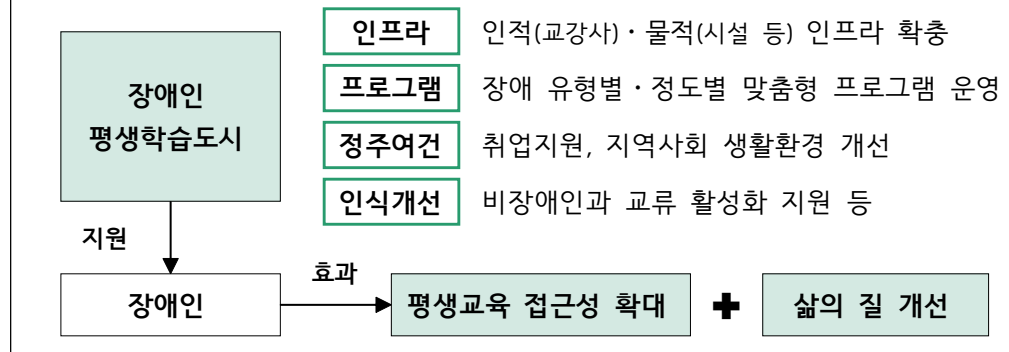
□ 현황 및 필요성

- 지역에 기반한 장애인의 역량개발 지원 및 지역 중심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국가는 시·군 및 자치구를 대상으로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를 지정하여 장애유형 및 정도에 따른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장애인의 사회통합과 삶의 질을 제고해야 함.
- 새정부는 사회적 약자의 생활 속 어려움을 두텁고 촘촘하게 보호해 실질적으로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사회적 약자를 위한 따뜻한 예산 4대 핵심과제 (2022.09.08.)를 발표하고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지원 대폭 확대를 발표함.
- 제5차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2023-2027)

□ 지역사회 내 장애인 평생학습 인프라 확충

- 장애인에게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평생학습 프로그램과 인프라를 제공하는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지속 확대
 - * (‘23년) 53개 → (‘27년 목표) 100개 / ‘23년부터 지원기간 확대(1년 → 3년)
 - * 우수모델을 공유·확산할 수 있는 협의체 구성·운영

【운영 흐름도】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 지역 평생교육기관의 프로그램별 장애인 학습가능 여부(장애정도별, 유형별 구분), 시설 확보여부 등 **정보공개** 강화

'23년	'24~'25년	'26~'27년
•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확대·고도화	• 평생교육기관 장애인 관련 정보공개 강화	•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100개 운영

* 지원대상 확대(60개) 및 지원기간 제한 폐지

- 이러한 흐름에 부응하여 2024년 종로구는 교육부(국립특수교육원)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로 신규 지정되었고, 2025년도 계속 지원하여 120,000천원(국비 60,000, 지방비 60,000) 규모로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중임.
- 이에 중장기적으로 체계적인 종로구 장애인 평생교육 사업 추진과 점진적 사업 규모 확장을 통해 지역사회 내 장애인의 학습 기회 보장 및 사회 참여 확대를 도모할 필요 있음.

* 2022년 평생학습 도시 종로구 선정.

* 2024년 장애인 평생학습 도시 종로구 신규 지정 및 2025년 계속 지원.

□ 관련근거

- 「평생교육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제5조의2(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 수립·시행), 제5조의3(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 제15조의2(장애인 평생학습도시)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평생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 평생교육진흥정책 수립·추진하고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를 지정 및 지원할 의무를 지니고 있음.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제15조의2(장애인 평생학습도시)

- ① 국가는 장애인의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특별자치시, 시·군 및 자치구를 대상으로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를 지정 및 지원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의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기구의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

- 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은 평생교육을 통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서울특별시 종로구의 경쟁력을 향상 시키고, 배움과 나눔을 실천하는 평생학습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구청장은 구민이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평생교육 지원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③ 구청장은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④ 구청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단체·시설·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 ⑤ 구청장은 구민의 사회생활에 필요한 문자해독능력 등 기초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평생교육 시설의 설치)

- ① 구청장은 구민이 원하는 평생학습도시를 조성하고, 구민의 평생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평생교육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할 수 있다.

제4조(경비지원) 구청장은 평생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평생교육 관련 평생학습동아리활동
2. 평생교육 우수 프로그램 제안 사업
3. 평생교육 어학교실 운영
4. 지역교육청, 대학 및 관내 평생교육기관·단체 등의 평생교육 진흥사업
5.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운영
6. 문자해독교육 프로그램 운영

○ UN CRPD(장애인권리협약): UN과 협정을 체결한 당사국(한국)은 협정사항을 준수해야 함, 제24조 교육 1. 당사국은 장애인의 교육받을 권리를 인정한다. 당사국은 이러한 권리를 균등한 기회에 기초하여 차별없이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 수준에서의 통합적인 교육제도와 평생교육을 보장한다. 5. 당사국은 장애인의 차별 없고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일반적인 고등교육, 직업교육, 성인교육 및 평생교육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이를 위하여 당사국은 장애인에 대한 합리적인 편의 제공을 보장한다.

□ 요구사항

○ ‘26년 종로구 장애인평생학습도시 계속지원 및 예산증액

△ 중증장애인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 체제 마련

- △ 학습에서 일자리까지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 마련
- △ 장애인 평생교육 네트워크 구축 및 기반 강화
- △ 학교형태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매뉴얼에 따른 지원 방침 마련

□ 예산요구안

- 종로구 장애인평생학습도시 계속지원을 위한 2026년도 예산 편성 및 증액 필요
- △ ('26년 종로구 장애인평생학습도시 계속지원) 총 사업비 160,000천원(국비 80,000원, 지방비 80,000천원)

8. 「학교형태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매뉴얼」 이행 및 운영비 지원 확대

□ 현황 및 필요성

- 교육부는 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청의 책무 및 시설 운영의 질 향상을 위해 지원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함으로써 장애인 평생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매뉴얼」 배포(21.6.30)하였고, 2022년 7월 이후 전국적으로 적용됨.
- 노들장애인야학은 종로구 관내 유일한 학교 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로서 2008년 3월 이래 지역사회에서 중증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와 지역사회 통합을 위해 노력해왔으나 현재 실제로 종로구로부터 지원 받고 있는 운영비는 임대료(24,000천원)가 유일함.
- 이에 종로구는 학교 형태 장애인평생교육시설 관할 기초지자체로서 교육부의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 시설 지원 매뉴얼」을 이행할 책임이 있음. 이에 따라 매뉴얼에 근거한 지원 방침 마련과 촘촘한 예산 지원이 필요함.

□ 관련근거

- 평생교육법 제20조의2 및 제31조

제20조의2(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의 설치)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감은 관할 구역 안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감 외의 자가 제1항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31조(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①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설비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12조의3(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1. 시설·설비의 개·보수에 필요한 경비
2. 시설 운영을 위한 인건비
3. 시설 이용자에 대한 급식·간식비
4. 교재·교구 구입비 등 장애인평생교육에 필요한 경비
5.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따른 교육 등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장애인 대상 교육을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서 실시하는 경우 그 교육에 필요한 경비
6. 그 밖에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제12조의3(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1. 시설·설비의 개·보수에 필요한 경비
2. 시설 운영을 위한 인건비
3. 시설 이용자에 대한 급식·간식비
4. 교재·교구 구입비 등 장애인평생교육에 필요한 경비
5.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따른 교육 등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장애인 대상 교육을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서 실시하는 경우 그 교육에 필요한 경비
6. 그 밖에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 교육부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매뉴얼(2021. 6. 30.)」[별첨2]

□ 시설·설비의 개·보수에 필요한 경비

○ (지원 원칙) 예산 지원 시 단순 시설의 증설이나 시설 이용자와 직접적으로 관계없는 시설 개·보수에 소요되는 경비는 제외 원칙

○ (지원 대상) 「평생교육법」 제20조의2 제1항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중 국가, 지자체 및 시·도교육감 소유 시설에 법인 등이 위탁 운영하는 경우이거나, 같은 법 제20조의2 제2항 및 제31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중 시설 설치자가 해당 시설을 자가 소유한 경우

○ (지원 요건) 아래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지원 가능
-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시설·설비기준*의 개정 등으로 「평생교육법령」에서 정한 시설의 개·보수가 필요한 경우

*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의 시설·설비기준(평생교육법 시행령 [별표1]) 및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시설·설비기준(동법 시행규칙 [별표2])을 모두 포함

- 교육부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의 시설·설비 표준안(‘20. 10. 안내)」의 기본요건에 미달하거나 추가요건* 등 보완이 필요한 경우

* 중증장애인, 시청각장애인의 이용편의를 위한 시설·설비
- 그 밖에 교육감이 추가적으로 정한 시설·설비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기존의 시설 개·보수가 필요한

경우

- (지원 비용 기준) 시·도교육청 초·중등학교의 교육환경개선사업비 집행 기준을 준용하여 사업목적 및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지원

□ 시설 운영을 위한 인건비

○ (상근 인력 인건비)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운영에 필요한 상근 인력(시설의 장, 교육·행정인력) 인건비는 해당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의 여건, 업무종사자의 전문성, 지역 내 유사기관의 보수 수준, 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청의 예산 현황 등을 융통성 있게 고려하여 지원액을 결정하되, 각 지자체의 연도별 생활임금 지급 기준액 이상을 반영하는 것을 권고

○ (외부강사 인건비) 문해교육, 문화예술 등 외부강사에 의한 교육과정 운영에 소요되는 강사 인건비는 최초 1시간 6만원, 초과 시에는 매 시간당 30,000원 지급

※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56개소('21.3.15.자 기준) 중 12개소(21.4%)는 6만원 이상, 34개소(60.7%)는 3~6만원 미만, 10개소(17.9%)는 3만원 미만 지급

□ 시설 이용자에 대한 급식·간식비

○ 급식 지원이 필요한 장시간 이용자를 대상으로 지자체별 기준 혹은 시·도교육청 해당연도의 급·간식비 지원 기준 등을 준용하되, 성인장애인학습자를 감안하여 지원

□ 교재·교구 구입비 등 장애인평생교육에 필요한 경비

- 장애인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교재 및 교구 구입비

□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장애인 대상 교육에 필요한 경비

○ 발달장애인 의사소통도구 및 의사소통지원 전문 인력 등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장애인 대상 교육에 필요한 경비는 해당 시설에 대해서 지자체별 여건에 맞게 지원

□ 그 밖에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교육 운영을 위한 공간의 임차료 및 전세 또는 임차보증금 지원 가능

○ '전세 또는 임차보증금' 지원 관련해서는 명확하게 법령 상 근거가 없는 상황으로

- 지자체 및 시·도교육청에서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운영 관련 공익적 필요성 및 예산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세 또는 임차보증금'을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6호('그 밖에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판단하여 지원할 수 있으나,

- 다만,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전세 또는 임차보증금을 지원하는 경우, 지자체 및 시·도교육감은 임대계약 체결 전에 임차기간 종료 시 보증금 반환 저해요소 여부를 확인하고, 임차보증금 회수 장치를 마련할 것을 권고

○ 평생교육법 제28조 제3항에 의거 시·도 조례에 따른 보험가입 또는 공제사업 가입 등 안전조치를 위해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

○ 그 밖의 기타 교육공간 관리비, 시설유지비, 차량유지비, 홍보물 제작비, 인쇄비, 공공요금, 사무용품 구입, 각종 수수료 등 일반 수용비 지원

□ 요구사항

○ 지속가능 및 안정적 교육공간 운영을 위한 임차료 지원 증액 요청

△ 교실 공간 임차료 지원 50%(12,000천원) 증액, 총 36,000천원 요청 (2025년 현재 24,000천원)

- 매년 건물주가 임대료 5% 인상하고 있고, 임차보증금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인상을 요구하고 있음. 올해의 경우 건물주가 2층, 4층에 대한 임차보증금을 각각 10,000천원 총 20,000천원 인상하였으며, 월임대료도 10% 인상함. 이처럼 매년 높아지는 임차료와 임차보증금에 대한 부담은 직접적으로 교육공간의 안정적 운영에 큰 어려움을 주고 있

음.

- 서울시의 경우 매년 해당 임차료 인상분을 반영하여 보조금이 소폭 증액되고 있으나, 종로구의 경우 지난 2019년 2,000천원 증액 이후 지난 2024년까지 6년 동안 22,000천원으로 동결해왔음.

** 종로구 임차료 지원금 2014~2018년 2,000천원 / 2019년~2023년 2,200천원 / 2024년 2,400천원

- 2024년 5년 만에 임차료 지원금액이 기존 22,000천원에서 8.3%(2,000천원) 증액되기는 하였으나, 지난 5년 동안 매년 5% 인상된 전체 임차료에 비해 현저히 적은 증가 수준임.
- 이에 따라 2026년 2, 4층 교실공간에 대한 임차료 지원 금액을 기존 24,000천원에서 50%(1,200천원) 증액한 36,000천원으로 증액 편성해줄 것을 요청함.

○ 성인 중증 장애 학습자의 안정적인 식사와 교육환경을 위한 급식비 지원 요청

△ 성인 중증 장애 학습자 급식비 지원 20,000천원 편성 (2025년 현재 미지원)

- 종로구 관내 식당 장애인 접근권 부재, 학생 대부분이 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등으로 인해 노들장애인야학에 등교하는 학생들의 식사가 매우 어려워 식사를 거르는 등 사회경제적·물리환경적으로 안정적인 식사가 어려운 환경이었음. 이에 노들장애인야학에서는 학생들의 안정적인 식사 지원을 위해 2014년부터 급식을 시작하여, 2016년부터는 학생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음.
- 2025년 현재 무상급식에 소요되는 금액은 100,000천원으로, 서울시의 경우 2022년부터 중증장애학생 급식비를 지원해 2025년 기준 50,000천원을 지원하고 있음. 하지만 관할 기초 지자체인 종로구의 경우 급식비 지원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음.
- 노들장애인야학은 매년 중증장애학습자 급식 비용에 사용되는 자부담 50,000천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평생교육법’과 ‘학교형태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매뉴얼’에 따르면, 종로구는 관내 유일한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인 노들장애인야학의 급식 운영비를 지원하여 중증장애인 학습자의 안정적인 식사를 마련할 책임이 있음.
- 이에 따라, 2026년 장애인평생교육시설 학생 급식비 지원 예산을 신설하여 급식비 자부담 금액의 40%인 20,000천원 편성을 요구함.



급식 배식



급식 식판



급식 현장 사진



급식 현장 사진

[참고] 노들장애인야학 2025년도 사업비 구성

세목		세부항목	금 액	산 출 기 초
총 계			455,667	
지방보조금(소계)			387,700	
일반운 영비	사무관 리비	시설 임차료	268,574	302,859,506원 중 268,574,000원(인상분반영 한도 조정) ·2층: 13,347천원 × 12개월=160,166천원 * 부과내역 : 매월 13,347,175원 (월임대료 12,133,795원+부가세 1,213,379원) ·4층: 11,891천원 × 12개월= 142,693천원 * 부과내역 : 매월 11,891,118원 (월임대료 10,810,107원+부가세 1,081,011원) ※ 25년도 임대료 인상 - 2층 11,030,723원 → 12,133,795원(부가세별도) - 4층 9,827,370원 → 10,810,107원(부가세별도)
		급식비	50,000	100,000천원(위탁계약) 학생 80명 * 1식 7,000원 * 20식 * 12개월 = 134,400,000

세목		세부항목	금 액	산 출 기 초
	공공운 영비	관리비	39,743	44,158,560원의 90% 39,743,000원 *2층 관리비: 1,839,940원 × 12개월=22,079,280원 *4층 관리비: 1,839,940원 × 12개월=22,079,280원
		공공요금	29,383	32,647,000원의 90% 29,383,000원 *2층 공과금: 14,330천원 13,994,216원(2024년 집행액 기준) × 102.4% = 14,330,077원 *4층 공과금: 18,317천원 17,887,687원(2024년 집행액 기준) × 102.4% = 18,316,991원
자부담(소계)			67,967	
일반운 영비	사무관 리비	시설 임차료	10,286	2층, 4층 임대료(302,859,506원) 중 서울시 및 종로구 보조금 지원 제외 금액 10,285,506원
		급식비	50,000	100,000천원(위탁계약) 학생80명 × 7,000원 × 192일(16(한달) × 2(개월))=107,520천원
	공공운 영비	관리비	4,416	44,158,560원의 10% 4,415,560원 *2층 관리비: 1,839,940원 × 12개월=22,079,280원 *4층 관리비: 1,839,940원 × 12개월=22,079,280원
		공공요금	3,265	2층 4층 공공요금(32,647,000원)의 10% 3,264,700원

9. 종로구 장애인평생교육 지원조례 제정

□ 현황 및 필요성

○ 장애인 평생교육에 관한 인식의 증진 필요

- 학령기 교육에서 소외되어 왔던 장애인에게 평생교육은 매우 중요하지만, 이에 대한 인식이 부재함. 장애인 평생학습을 장애인의 전 생애에 걸쳐서 보장되어야 마땅한 권리로 인식하고 그를 보장하기 위한 장애인 당사자 중심의 교육체제 지원이 요구됨.
- 장애인 평생교육의 이념과 철학을 공고히 정립하고, 장애인의 장애인에게 ‘평생학습을 받을 권리’는 장애인의 필수적인 권리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함.

○ 장애인의 삶과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장애인 평생교육의 필요성 대두

- 장애인 평생교육이 단순한 ‘교육’에 그치면 그 한계가 분명함. 장애인 평생교육과 고용, 복지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장애인의 삶을 변화시키는 통합형 평생교육이 필요함.

- 장애인 정책의 흐름이 탈시설로 전환됨에 따라 지역사회로 탈시설하는 장애인이 늘어나고 있음. 이에 종로구는 지역사회에 자립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기반의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평생교육을 제공할 책임이 있음.

○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정에 따른 조례 개정

- 유엔장애인권리협약으로 장애인 인권과 복지, 교육에 대한 패러다임이 변화함.
- 현행 적용되고 있는 일반 평생교육 지원 조례는 변화되고 있는 장애에 대한 인식을 담고 있지 않으며 차별적인 장애인 평생교육의 상황을 개선시키기 위한 영향력을 가지지 못함.
- 장애인의 평생학습 보장을 통하여 장애인의 주체적 성장과 지역사회 통합이라는 가치로 별도의 종로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조례 제정이 필요함.

○ 22대 국회 내「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 흐름

-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지난 24.12.10 진선미 의원이 「장애인평생교육법」을 발의하였고, 1월 9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진행된 공청회에서 교육부도 법안에 대한 찬성의견을 밝힘. 정치적 불확실성이 존재하지만 25년 상반기 내 「장애인평생교육법」의 제정이 가시화 되고 있음.
- 「장애인평생교육법」의 제정 논의와 교육부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매뉴얼] 등 그동안 소외되어 왔던 장애인평생교육 분야의 제도화가 제도화 중인 상황임. 「장애인평생교육법」의 제정 흐름에 따라 지자체 조례 제정 노력이 필요함.

○ 2024년 종로구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신규 지정 및 2025년 계속 지원 선정

- 2024년 종로구는 교육부(국립특수교육원)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로 신규 지정되었으며, 2025년도에도 계속 지원 선정됨. 중장기적으로 장애인 평생교육 사업 규모 확장 및 체계적 추진, 지역사회 내 장애인의 학습 기회 보장 및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장애인 평생교육 사업 및 지원에 대한 안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함.
- 서울시 내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사업에 참여한 은평구, 서대문구, 노원구 등 다수의 지자체가 사업 기간 내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조례를 제정한 바 있음.

자치구	조례명	제정연월	비고
동작구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2019. 07. 25.	
서초구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2020. 06. 03.	
서대문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2022. 03. 02.	2022년 장애인평생학습도시 지정
노원구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2022. 04. 28.	2023년 장애인평생학습도시 지정
마포구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2023. 07. 13.	
은평구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2023. 11. 09.	2023년 장애인평생학습도시 지정
강서구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2024. 03. 27.	2024년 장애인평생학습도시 지정
영등포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2024. 05. 16.	2023년 장애인평생학습도시 지정
강북구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2024. 11. 01.	
구로구	서울특별시 구로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2025. 03. 06	

□ 관련근거

- 「대한민국 헌법」 제31조
- 「교육기본법」 제3조
- 「평생교육법」 제5조
- 「UN장애인인권협약」 제24조
- [의안번호 2206364] 「장애인평생교육법안」 (진선미의원 등 11인)

□ 요구사항

-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 흐름, <종로구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사업과 발맞춰 장애인의 권리에 기반해 종로구 내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강화를 위한 종로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제정
 - 장애인 평생교육 ‘권리’로 보장 및 구청장 책무성 강화
 - 장애인 평생교육의 별도 전달체계 구축 (종로구 장애인평생학습관)
 - 장애인 평생교육의 별도 심의체계 구축 (종로구 장애인평생교육협의회)
 -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의 지원 기준 마련 및 명시
 -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지역사업 통합적 평생교육 보장 및 지원
- 종로구 장애인평생교육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협의체 구성 및 토론회 개최
- 종로구 장애인평생교육 지원조례(안) 별첨1 참고

4. 장애인 이동권 및 접근권 보장

— 세부 정책요구안 —

10. 종로구 마을버스 전면 저상버스 도입을 위한 저상버스 예외노선 대상 도로 개선·계획 연내 수립
11.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조례] 전면개정
12. 종로구 관내 거주차 우선주차 구역 장애인기관 및 단체 우선배정 조례개정
13. 관내 휠체어 이용 인도 확보

10.

종로구 마을버스 전면 저상버스 도입을 위한 저상버스 예외노선 대상 도로 개선·계획 연내 수립

□ 현황 및 필요성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의 개정으로 2023년 1월부터 시내 노선버스의 대·폐차 시 저상버스 도입이 의무화.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는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관련 단체 및 법인의 의견수렴과 예외노선 인정 시 대안 마련을 의무화함.
- 그러나 종로구 마을버스 운행현황은 8개 업체, 11개 노선 중 무려 5개 노선이 저상버스 예외노선으로 지정됨.
- 법 개정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예외노선에 대한 철저한 심사 필요하며 전면적인 저상버스 도입을 위한 도로 개선 및 계획 연내 수립 필요하며, 이에 따라 해당 심사과정에 (사)전국장애인동권연대 종로지회 등의 당사자 단체의 심사의견 반영 필요.

<2025년 종로구 마을 저상버스 도입 예외승인 노선 현황(5개 노선)>

운수업체	노선번호	기-종점	사유
대산교통	종로01	아름다운가게·정독도서관-종각역YMCA	좁은도로폭, 급경사
나경운수	종로05	서대문3번출구-종로문화센터	좁은도로폭, 급경사, 급커브
와룡운수	종로08	명륜3가-종로5가	좁은도로폭, 도로활자구간, 급경사
인왕교통	종로09	수성동계곡-남대문	좁은도로폭, 차량교행불가
약수교통	종로13	평창동주민센터-부암슈퍼	급경사, 급커브

□ 관련근거

○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제14조(노선버스의 이용 보장 등)

제14조(노선버스의 이용 보장 등)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이하 “노선버스 운송사업자”라 한다)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교통약자에게 승하차 시간을 충분히 줄 것
2. 교통약자에게 승하차 편의를 제공할 것

3. 저상버스 및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버스 등 교통약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진 버스(이하 “저상버스등”이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일반버스와 저상버스등의 배차순서를 적절히 편성할 것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할 때에는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면허기준을 갖추고 저상버스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臺數) 이상 운행하려는 자에게 우선적으로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가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도지사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저상버스등의 도입, 저상버스등의 운행 및 교통약자의 접근성을 고려한 버스정류장과 도로 등 시설물의 정비 계획을 반영하고, 이에 따라 저상버스등을 도입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라 저상버스등을 도입(휠체어 탑승설비를 기존 버스에 장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선버스 운송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비율은 교통약자의 인구현황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도로관리청은 저상버스등의 원활한 운행 및 교통약자의 접근성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버스정류장과 도로를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국가는 제5항에 따른 버스정류장의 정비 등 필요한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⑦ 노선버스 운송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행형태에 사용되는 버스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제2항에 따라 대폐차하는 경우에는 저상버스로 도입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의 구조·시설 등이 저상버스의 운행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해당 노선의 노선버스 운송사업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교통행정기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노선버스 운송사업자가 제7항 본문에 따라 저상버스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우선 도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제4조의2(저상버스예외승인 신청 및 결과 통보 등)

제4조의2(저상버스예외승인 신청 및 결과 통보 등) ① 노선버스 운송사업자는 법 제14조제7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관 교통행정기관에 저상버스 도입 예외 승인(이하 “저상버스예외승인”이라 한다)을 신청할 수 있다.

1. 해당 노선에 설치된 「도로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시설이나 공작물의 높이가 저상버스 높이보다 낮아 저상버스의 운행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2. 해당 노선에 도로의 종단경사도가 급격히 변화하여 도로와 버스 하부의 마찰이 발생하는 구간이 포함된 경우

3. 그 밖에 도로의 시설·구조 등이 해당 노선의 저상버스의 운행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② 저상버스예외승인 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저상버스 도입 예외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또는 도서를 첨부하여 소관 교통행정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1. 해당 노선의 기점·종점·거리와 주된 운행경로가 표시된 노선도 1부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설계도서 및 사진 1부
 3. 그 밖에 저상버스예외승인이 필요한 사유를 설명하는 참고 서류 및 도서 1부
-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교통행정기관은 저상버스예외승인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하거나 신청인에게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④ **교통행정기관은 저상버스예외승인을 하려면 미리 교통약자 관련 법인 또는 단체와 교통분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⑤ 교통행정기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저상버스예외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호의3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 요구사항

○ (사)전국장애인동권연대 종로지회가 마을버스 저상버스 예외노선 모니터링 사업 진행

- 총사업비 : 10,000 천원
- 조사 방식 (조사단 구성하여 진행)
 - 1단계: 당사자 및 전문가(전국장애인동권연대), 지자체, 버스 회사
 - 2단계: 도로 관리 부처(市 도로계획과 또는 區 도로과), 경찰서 등
- 사업 계획
 1. 조사단 구성하여 저상버스 예외노선 승입 적합성 판별
 2. 저상버스 예외노선 해소 위한 구체적 계획 수립

○ 저상버스 예외노선 대상 지자체 관할 도로 개선 및 저상버스 전면 도입 계획 연내 수립

11.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조례] 전면개정

□ 현황 및 필요성

○ 대법원 판결 이행 및 장애인 접근권 보장 필요

: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이 장애인의 접근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하고, 국가가 14년간 이를 방치한 책임을 인정했음. 이에 따라, 자치구 차원에서도 선제적인 조치를 마련해야 함. 단순한 행정적 지원을 넘어, 법적·제도적 장치를 강화하여 장애인의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조례 개정이 필요함.

○ 서울시 및 중앙정부의 정책 변화를 선도하는 자치구 역할 강화

: 중앙정부 및 서울시 차원의 접근권 보장 정책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자치구가 선제적으로 조례를 개정하여

모범적인 정책을 수립해야 함. 특히, 소규모 점포 및 민간시설까지 포함하는 자치구 차원의 선제적 접근권 정책을 마련할 경우, 타 지자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자치구가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이를 통해 전국적인 정책 변화를 유도해야 함.

실질적인 접근권 확대를 위한 지원 및 관리 체계 필요

: 경사로 설치 지원을 넘어, 도로점용허가 절차 개선, 기존 건축물 접근성 강화 등 종합적인 접근권 보장 정책이 마련되어야 함. 이를 위해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실효성 있는 예산 확보 및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함. 장애인의 접근권이 단순한 시설 개선을 넘어, 생활 속에서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해야 함.

○자치구 차원의 접근권 보장 로드맵 마련 필요

: 자치구는 장애인 접근권 보장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단계별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함. 단기적인 경사로 설치 지원을 넘어, 5년 또는 10년 단위의 ‘자치구 장애인 접근권 보장 로드맵’을 수립하여 지속적인 정책 이행을 보장해야 함.

: 단기에는 자치구 조례 개정 및 행정 절차 개선, 중기에는 지원 체계 확립 및 접근성 보장을 위한 사업 신설/확대, 후기에는 관내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접근성 100% 달성, 전반적인 접근권 보장 체계 구축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로드맵 마련 필요.

□ 세부요구안

자치구 내 모든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이동약자가 차별 없이 공공시설과 민간시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핵심 목적임. 기존 조례는 지원 대상과 범위가 제한적이며, 실질적인 접근성 개선에 한계를 갖고 있음. 이에, 자치구 차원에서 장애인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강화되어야 하기에, 아래의 방향으로 조례 전면 개정을 요구함.

1. 소규모 점포(50㎡ 미만)에 대한 편의시설 지원 확대 및 의무화

- 기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상시설에 한정되어 있어, 자치구 내 다수의 소규모 상점·식당·편의점 등이 접근권 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 대법원의 2024년 12월 판결에서 국가가 14년간 장애인의 접근권을 보장하지 않은 책임을 인정한 만큼, 자치구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소규모 점포에도 편의시설 설치 지원을 의무화하고 이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해야 함.

2. 자치구 차원의 경사로·자동문 설치 지원 확대 및 도로점용허가 절차 개선

- 현행 도로법상 경사로는 도로점용허가 대상이지만, 허가 기준이 모호하고 행정청의 재량으로 거부되는 사례가 많음.
- 김예지 의원이 발의한 도로법 개정안의 취지를 반영하여, 자치구 차원에서 도로점용허가 기준을 명확히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를 거부할 수 없도록 조례에 명시해야 함.
- 더불어, 편의시설 설치 시 도로점용허가 절차 간소화 및 원스톱 행정지원체계 도입 필요.

3. 기존 공공 건축물(신축 건물 외)의 접근권 보장 지원 사업 추진

- 자치시는 신축 건물뿐만 아니라 기존 구립 공공건축물에도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 설치 등 접근권 보장 지원 사업을 별도로 추진해야 함.
- 건물의 연한과 관계없이 기존 구립 공공건축물에도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 확대하여, 편의시설 설치 등을 진행할 경우, 자치구 차원의 건축물 개보수 지원금 지원 필요.

4. 자치구 장애인 접근권 보장 로드맵 수립 및 이행

단기적 경사로 설치 지원을 넘어, 5년 또는 10년 단위의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여 지속적인 정책 이행을 보장해야 함.

- 단기(1~3년): 자치구 조례 개정, 행정 절차 개선, 건물연한과 상관없이 공공건축물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 의무화 추진.
- 중기(4~6년): 장애인 접근권 지원 체계 확립, 다중이용시설 접근성 보장을 위한 사업 신설·확대.
- 장기(7~10년): 자치구 내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의 접근성 100% 달성, 장애인 접근권 보장 체계 구축 완료.

■ 관련 법률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장애인차별금지법)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약칭: 장애인등편의법)
- 서울특별시 장애인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조례
- 위법한 부진정 행정입법 부작위로 인해 장애인 접근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국가배상으로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대법원 2024. 12. 19.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 등 이동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12. 종로구 관내 거주차 우선주차 구역 장애인기관 및 단체 우선배정 요구

□ 요구사항

- 최근 공공기관/거주자 우선주차 구역은 점차 사설화 되어 지역내 공단에서 이용하는 수익사업으로 진행되고있음. 소규모 장애인단체의 경우 해당 건물내 안정적인 주차공간이 확보되지않을 경우, 외부 거주차 우선주차 구역혹은 공공기관등을 통해 신청하나, 장애인의 당사자 지원을 위한 위급한 상황등이 발생됨에 따라, 차량 운행등이 시급하게 사용할 필요가 있음.
- 지역내 교통약자인 장애인을 지원할 수 있는 시설의 관련 협조 또한 필요한 실정.

13. 종로구 관내 휠체어 이용 인도 확보

□ 현황 및 필요성

- 종로구 관내 인도에는 (수동)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장애인들에게는 이동이 적합하지 않는 재질을 사용함으로써 안전과 건강에 큰 피해를 끼치고 있는 것이 현실임.
- 이에 인도에도 (수동)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장애인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하게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마땅함.
- 현재 종로구에 대학로 인도에는 자전거길을 만들어서 함께 이용할 수 있기에 휠체어를 탄 장애인에게도 안전하고 건강한 이동을 보장하는 사례가 있음.
- 종로구 관내 모든 인도에 가능한 곳에 대하여 실사를 하고 주요도로를 중심으로 휠체어 이용장애인들의 안전과 건강한 이동을 보장해야 할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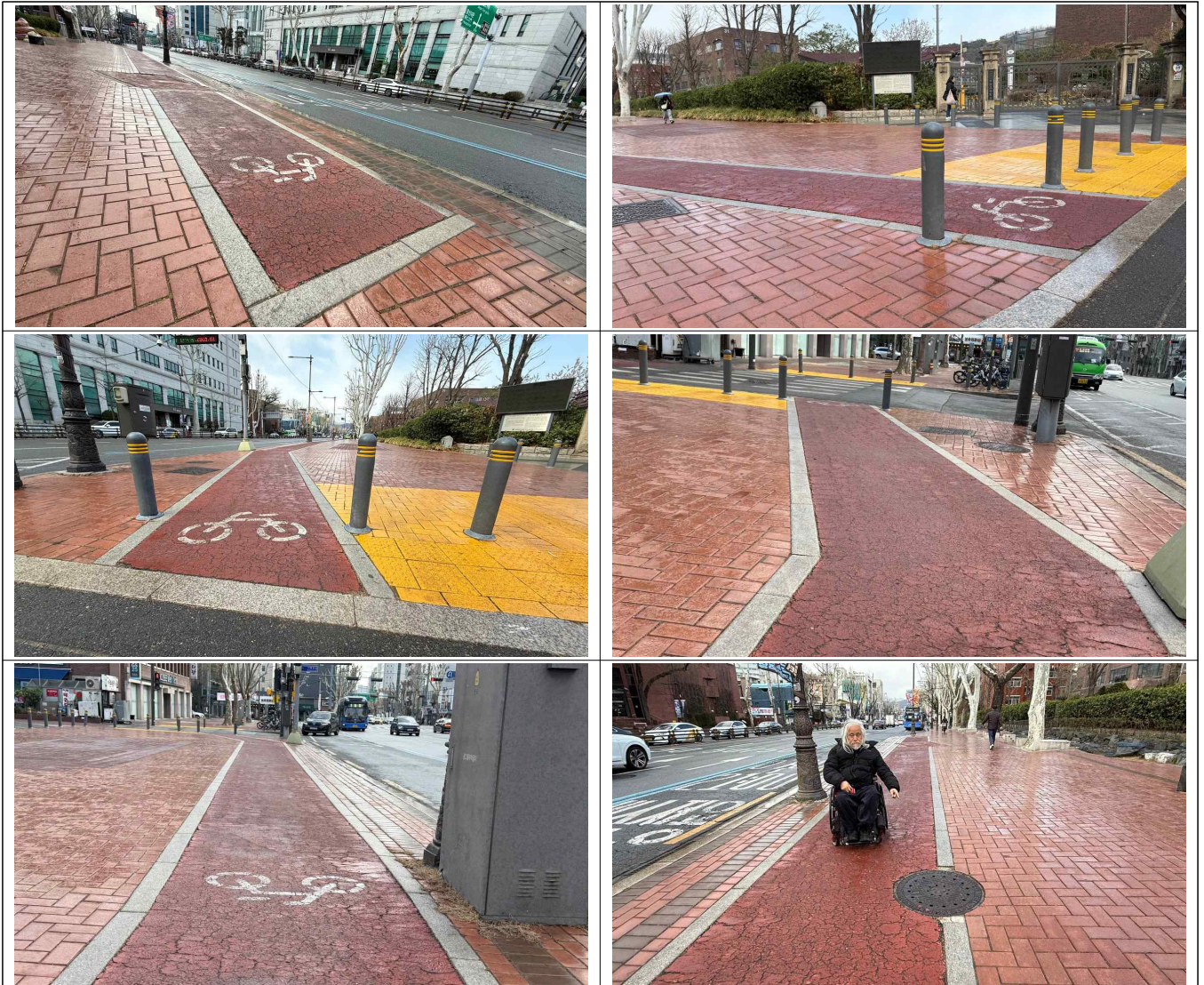
■ 관련 법률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약칭: 장애인등편의법)

제4조(접근권) 장애인등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장애인등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동등하게 이용하고,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예시 : 대학로 이화사거리에서 방송통신대 방향 인도)



5. 장애인 탈시설 권리 보장

— 세부 정책요구안 —

14. 종로구 장애인 탈시설 지원 조례 제정

15. 종로구 관내 장애인 자립 공간 확보

14. 종로구 장애인 탈시설 지원 조례제정

□ 현황 및 필요성

- 장애인의 탈시설 권리는 UN장애인권리협약에 명시된 권리로서 대한민국은 2008년 해당 협약을 비준한 바 있음. 또한 UN장애인권리위원회는 지속적으로 시설화를 방지하고, 소규모 거주시설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시설을 폐쇄할 것과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 생활을 지원하도록 국가의 의무 규정함.
- 서울시는 2009년부터 탈시설 및 자립생활 정책을 시행하고 보다 안정적 탈시설 정책을 촉구하는 시민사회의 요구를 반영하여 2022년 7월 11일,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통해 △서울시장이 탈시설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 △탈시설 정책 민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탈시설 지원 사업 범위 및 예산 지원 등의 정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나온 장애인이 독립된 주체로서 지역사회에서 자립하여 생활하면서 완전한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하지만 장애인의 탈시설과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이자 비로소 장애인의 탈시설 권리가 명문화되었던 탈시설 조례가 “의사표현도 힘든 중증장애인을 자립이란 명분으로 오히려 내몰고 있다”, “장애인을 돌봐야 하는 가정에도 큰 부담을 야기한다”는 이유로 24년 6월 17일 탈시설 조례 시행 약 2년 만에 폐지됨.
- 이에 UN장애인권리위원회가 24년 6월 21일 성명을 통해 서울시의 탈시설 지원조례 폐지에 대한 직접 입장을 밝힘. 위원회는 탈시설이 장애인권리협약에 따르면 탈시설 지원 조례 폐지는 “퇴행적 조치”라고 지적하며, 특히 위원회는 “시설 유지를 옹호하는 단체와 정치인들의 요구를 반영하려 지자체가 장애인을 독립적으로 살 수 없는 존재로 묘사하거나, 지적장애인에 대한 경멸적 표현이 공식석상에서 발언되는 점”에 대한 우려를 표함. 아울러 위원회는 서울시의회가 탈시설 지원 조례안을 폐지하며 “시설도 장애인의 거주 선택지”라고 주장한 점에 대해서도 “시설 수용은 결코 장애인 보호의 한 형태 또는 ‘선택’으로 여겨질 수 없다”며 확실한 입장을 표명함.

- 이에, 장애 시민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탈시설 정책을 종로구 차원에서 책임 있게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종로구 장애인 탈시설 지원조례」 제정을 요구하고자 함.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 「서울시 제2차 장애인거주시설 탈시설화 추진계획」
- (2014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최종견해) 정신 또는 지적 장애를 포함하여 장애를 이유로 한 자유의 박탈을 전제하고 있는 법률 조항을 폐지할 것.
- (2017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 일반논평 제5호) 시설은 확대되어서는 안 되며 기존 시설 거주자들이 떠나고 새로운 거주자가 들어와서도 안 됨. 시설에서 확장된 이른바 ‘위성’ 주거 형태, 즉 개인적 생활의 모습(아파트 또는 단독 주택)을 취하고 있지만 시설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주거 형태는 설립되어서는 안 됨.
- (2019 국가인권위원회 정책권고) 자립생활이 시설보호에 우선한다는 자립생활 원칙과 이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와 책임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음. 국가가 탈시설 개념에 부합하는 지역사회 거주서비스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
- (2024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성명발표) “시설도 CRPD 부합” 주장하며 탈시설 지원조례 폐지한 서울시에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가 직접 “탈시설은 당사국의 의무”...한국 대상 첫 성명 발표

□ 요구사항

○ 종로구 장애인 탈시설 지원 조례 제정

- ▲ 종로구 관할 장애인거주시설 탈시설 추진계획 수립
- ▲ 탈시설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추가지원
- ▲ 탈시설.자립지원이 필요한 가구 발굴 및 지자체형 주거유지서비스 도입
- ▲ 관내 장애인의 개인별 자립계획 수립 및 탈시설.자립지원 연계사업 실시
- ▲ 신규시설 설치 금지 및 입소.전원 금지

□ 예산요구안

- 비예산 사업

15. 종로구 관내 장애인 자립 공간 확보

□ 현황 및 필요성

- 주거복지서비스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지원체계의 중심임. 탈시설 장애인의 주요 자립 공간은 자립생활주택, 임대주택, 지원주택 등이 있음.
- 자립생활주택은 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임차한 주택에 탈시설 장애인이 무상으로 거주하며 자립생활을 훈련 하는 공간으로, 현재 서울시는 65호(종로구 2호)를 운영 중임. 지원주택은 장애인 당사자가 집의 소유권을 갖고, 개인의 욕구와 필요에 맞게 주거 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임대주택으로 서울시는 2018년부터 시행 중이며 현재 253개소를 지원 중임.

서울시 자립생활주택 및 지원주택 지원 현황 (2024.4월 기준, 서울시)

자립 생활 주택수 (65)	강동구	강북구	강서구	관악구	광진구	구로구	금천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
	7	4	3	3	3	4	5	3	4	3
	동작구	서초구	성동구	성북구	송파구	양천구	영등포구	은평구	종로구	중랑구
	1	1	3	3	2	3	2	7	2	2

지원 주택 253	강동구	구로구	노원구	동대문	서대문
	48	16	12	9	10
	성북구	송파구	양천구	은평구	
	12	73	21	52	

- 서울시는 장애인자립생활주택의 공공임대주택으로의 전환을 추진 중이며, 2025년부터 현재 실비 지원 중인 임차료를 ‘공공임대주택 평균 임차료’ 수준으로 지원할 계획임. 해당 전환은 탈시설한 장애인이 익숙해진 지역사회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이용하며 주택에 거주하는 동안 안정적인 거주지 확보에 도움이 됨.
- 그러나 종로구는 서울시 자치구 평균 공공임대 주택 비율이 5.37%인 것에 반해 1.39%로 절반을 하회하고 있음. 이는 종로구의 LH와 SH에만 의존하고 있는 주거정책 때문임. 종로구의 정책은 탈시설 장애인 및 종로구 지역 장애인의 안정적인 주거 확보를 저해하고 자립을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임.
- 종로구에서 장애인이 지역주민으로서 안정적인 주거확보와 일상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종로구 관내에서 다양한 방식의 공공임대주택(자치구 운영 ‘청년주택’과 ‘공동체 주택’, 매입임대 예산 편성, 재개발건설임대 등)을 자립생활주택 및 지원주택의 방식으로 제공하여야 함.

□ 관련근거

- 「장애인복지법」(‘21.12.21 일부개정) 제27조(주택공급)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주택 등 주택을 건설한 경우에는 장애인에게 장애 정도를 고려하여 우선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18.07.19 일부개정)
 - 제16조(자립생활주택 운영) 시장은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퇴소한 장애인이 희망하는 경우 자립생활을 경험하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자립생활주택을 운영한다.

- 제17조(주거생활 지원) ①시장은 주택공급규칙에 따라 서울특별시가 분양하는 공공임대주택(영구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등) 중 일부를 장애인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19.12.31 시행)
- 「서울시 제 2차 장애인거주시설 탈시설화 추진계획」('22.05.16)
- 「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22.07.11 시행)

□ 요구사항

- 종로구 내 SH-LH 통한 임대주택 12호(자립생활주택 2호, 장애인 대상 지원주택 10호) 확보
- 종로구 자체 임대주택 5호 확보
- 자립생활주택 및 지원주택 운영을 위한 예산 확보

□ 예산요구안

- 지원주택 운영비 : 1호당 2,300천원/연 × 10호 = 23,000천원
- 지원주택 인건비 : 2호당 45,600천원/연 × 5인 = 228,000천원
- 자립생활주택 임차료 : 2호당 2,000천원/월 × 12개월 = 24,000천원
- ※ 종로구 자체 임대주택 확보

6. 성과 재생산권리 보장

— 세부 정책요구안 —

16. 종로구 장애여성의 성과 재생산권리 보장

17. 종로구 젠더기반 폭력피해 장애여성의 지원정책마련

16. 종로구 장애여성의 성과 재생산권리 보장

□ 현황 및 필요성

- 한국 정부의 장애여성 정책은 가임 여성 지원 중심으로 모성권에 한정되어 있으며 다양한 연령과 유형의 장애여성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음. '출산축하금'이라는 일시적인 비용 지원으로 구조적인 차별과 배제의 문제를 지원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또한 출산 및 육아 등 돌봄 지원이 필요함에도 가정 방문 서비스와 당사자를 지원하는 활동지원을 병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고,¹⁾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에서 수행하는 '여성 장애인모성보건사업'은 장애여성의 월경, 피임, 임신중단, 성매개감염을 비롯한 성과 재생산 건강 전반을 포함하지 않음.
- 서울시 25곳의 자치구 대다수가 장애여성의 고유성과 특수성을 고려한 자치구 차원의 정책이 전무한 수준임. 장애인의 성과 재생산 권리를 확보를 위해서는 누구나 의료서비스와 정보에 차별 없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 차별과 폭력에 대한 두려움 없이 의사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함. 또한 성과 재생산에 있어서 자유로운 결정에 따른 행위로 차별과 폭력, 빈곤에 놓이지 않도록 하는 사회안전망을 만들어야 함. 이에 성과 재생산 권리 실현 방안을 통합적으로 포함한 지원 체계 마련이 요구됨.
- 따라서 “모든 사람의 성과 재생산 건강과 권리 및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등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의 성적 권리와 재생산 권리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성과 재생산에 관한 권리, 종합계획과 추진계획의 수립·시행 등, 월경, 피임, 성별 확정 및 성별 정정, 보조생식기술, 임신·출산과 임신중지, 포괄적 성교육 등 모든 생활 영역에서 성과 재생산권리를 평등하게 보장하기 위한 법제도 및 정책이 마련되어야 함.

□ 관련 근거

1) 출산한 장애여성이 산모·신생아방문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활동지원 급여를 받을 수는 있지만 같은 시간대 중복으로 서비스받는 것은 불가하다.

- 장애인복지법 제9조제2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8조의3
- 보건의료기본법 제10조
- 장애인인권헌장 제11조 “장애여성은 임신, 출산, 육아 및 가사 등에 있어서 생활에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요구사항

- ▲ 자립생활 조례 내 장애여성 성·재생산 건강·권리, 인권 보장 명시
- ▲ 임신·출산과 임신중지 등 전반적인 권리를 이해할 수 있는 포괄적 성교육 사업 추진
- ▲ 종로구 관내 장애여성이 접근가능한 산부인과 설치 및 운영지원

17. 종로구 젠더기반 폭력피해 장애여성의 지원정책마련

- 시설에서는 자신의 건강상태를 알 수 있는 경험이나 정보를 가지기 어렵고, 본인의 의지로 자유롭게 진료 여부를 결정하거나 외출하기 어려워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있음. 성교육 등을 통한 성건강에 관한 정보제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경우 당사자가 진료나 치료의 필요성을 자각하는 것도 어려울 수 있음²⁾ 통계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성폭력피해자 보호소 거주자 256명 중 145명(56.64%)이 장애인이며, 2021년 기준 보호소 3년 초과 거주자의 67%가 장애여성인 것으로 나타남. 보호소에 방문한 장애여성 중 32.5%가 3년 이상 보호소에 거주하는 상황임.³⁾ 비장애인 보호시설, 특별지원 보호시설, 장애인학대쉼터는 다양한 장애에 맞는 편의시설과 지원이 부족하고, 쉼터의 경우 긴급피난 형식으로 장애를 고려한 지원을 받을 수 없음.⁴⁾ 이렇듯 보호시설 입소자 중 다수가 장애여성이지만 퇴소 후 지역사회에 독립해서 살기 위한 적절한 지원 체계가 부족하여 오랫동안 보호시설에서 머무르며 장기시설화되고 있음. 새로운 피해자의 보호시설 입소도 어려워짐.⁵⁾
- 따라서 보건복지부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에서 피해장애인의 거주형태를 살펴보면, 재가 80.2%, 시설

2) 의료 사각 지대에 있는 미등록 이주민 중에서도 산부인과 진료를 가장 절실하게 원한다는 조사 결과가 있었음.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911070600025 또한 가출소녀들도 성폭력 피해 등을 이유로 산부인과 진료를 원하고 있지만 사회적 편견 등으로 인해서 진료의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드러남. http://www.hani.co.kr/arti/area/area_general/615232.html

3) 여성가족부, “성폭력상담소 보호시설 운영실적”. (2021).

4) 서혜정, “여성장애인 지원과 권리, 현실 그 너머. 피해자 지원을 중심으로”, 경남여성장애인연대, (2021).

5) 서울특별시, “폭력피해여성 지원기관의 장애여성 지원 실태 및 지원 방안”, (2017).

19.8%로 재가장애인이 더욱 많은 학대 경험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학대행위자는 가족 및 친인척이 36.4%(432건)로 가장 많았음.⁶⁾ 특히 탈가정 이후 대안 및 지지적 지원체계가 부재한 상황에서 장애여성은 고시원, 쪽방, 노숙 등 불안정한 주거로 내몰림. 지역사회 내 장애여성 피해자 자립 지원 제도 및 정책이 절실함. 보호시설을 퇴소하는 장애여성의 자립지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장애여성 피해자의 자립지원 정책이 보장되어야 함.

□ 관련 근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보건의료기본법」 제10조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9조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9조, 제30조
-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긴급상황을 포함한 탈시설 가이드라인(Guidelines on deinstitutionalization, including in emergencies) 유엔장애인권리협약 CRPD/C/27/3, 2022년 9월 9일
-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23조, 제25조

□ 요구사항

- ▲ 시설 거주 장애여성의 재생산권 침해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조사 추진
- ▲ 젠더 폭력 피해 이후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는 주거 및 활동지원 지원 정책 마련

6) 보건복지부, “2022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 보건복지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2023. 10.).

별첨1

종로구 장애인평생교육 지원조례(안)

종로구 장애인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25.4 종로구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20조, 「평생교육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직업생활 및 여가·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평생교육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장애인 평생교육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문해교육, 학력보완교육, 직업능력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자립생활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②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제 6조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
2. 제 7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③ 장애인평생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장애인평생교육기관이란 「평생교육법」 제 2조 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중 장애인평생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2. 「장애인복지법」 제 30조의 2에 따른 장애인 가족 지원사업 수행기관, 같은 법 제 54조에 따른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같은 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같은 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 중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기관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고 한다)은 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장애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자립생활 그리고 직업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의 평생교육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평생교육진흥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① 구청장은 각 호의 계획을 포함하는 장애인평생교육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정책의 목표 및 시행방법
2. 장애인 접근성 증진 등 장애인 평생교육 기반 확충
3. 장애 유형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4. 발달장애인 등 중증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 지원
5.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 지원
6.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 방안
7.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정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
8.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장애인평생교육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때 장애인의 성별, 연령, 장애의 유형 및 정도 등 특성을 고려하고 장애인, 장애인가족, 관계 기관 및 전문가의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구청장은 장애인의 평생교육을 권리로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하며, 각 호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1. 장애인 평생교육 정보제공 및 상담
2.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 개발 및 연구
3.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및 기관의 운영
5. 장애인평생교육 지원 관련 편의제공
6.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 양성·교육 및 연수 등 역량 강화
7.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
8.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장애인평생교육시설)

① 구청장은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④구청장은 장애인이 제1항의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서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설의 접근 및 이용 등에 불편함이 없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① 구청장은 장애인의 학력 취득·학력보완 및 학교교육에 준하는 기회 제공을 위하여 학교형태의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②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은 평생교육법 제 31조의 1항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기준, 제 20조의 2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 기준을 충족한 시설을 말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은 장애인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수학습지원, 의사소통지원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보조인력을 배치할 수 있고, 관련 시설·설비 및 교재·교구 등을 둘 수 있다.

④ 구청장은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시설·설비 확충 및 인력 배치 등이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운영기준에 미달되지 않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제8조(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조례 제 6조와 제7조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대해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해야 한다.

1. 시설·설비의 개수·보수에 필요한 경비
2. 시설·설비의 운영에 필요한 임차료
3. 시설 운영을 위한 인건비
4. 시설 운영에 필요한 급·간식비
5. 교재·교구 구입비 등 장애인 평생교육에 필요한 경비
6. 그 밖에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제9조(장애인평생교육기관)

① 장애인평생교육기관은 장애인의 평생교육 기회 증진을 위하여 장애유형, 장애정도, 지역특성,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주제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장애인평생교육기관이 장애인평생교육 프로그램 또는 제17조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과정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는 장애인평생교육기관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각종 실태조사에 참여하여야 하고, 연구·개발 및 네트워크 구축 등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10조(종로구 장애인평생학습관)

- ① 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의 장애인에게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장애인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하여 종로구 장애인평생학습관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 ② 구청장은 시·군·구장애인평생학습관의 설치 또는 재정적 지원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평생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③ 종로구 장애인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장애인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2. 장애인평생교육 상담
 3. 장애인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4. 장애인평생교육 관련 정보의 수집·제공
 5. 장애인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장애인평생교육의 기회 및 정보의 제공
 6. 장애인평생교육 시설 및 기관 간의 연계체계 구축
 7. 그 밖에 장애인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종로구 장애인평생학습관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1조(장애인 평생교육 운영위원회 설치)

- ① 구청장은 장애인 평생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협의 및 자문을 위하여 장애인 평생교육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 및 발전방향 제시
 2. 장애인 평생교육 추진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지역 사회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기관 및 단체 상호간 교육 프로그램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장애인 1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하며,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장애인평생교육 담당공무원
 2. 장애인, 장애인가족 또는 지역주민
 3. 장애인단체·시설·기관 대표 또는 관계자

4. 특수교육 또는 평생교육 전문가

5.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2조(고용·복지와의 연계 지원)

- ① 장애인평생교육시설등은 장애인의 직업 획득 및 유지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
- ② 장애인평생교육시설등은 장애인의 고용 활성화 및 소득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학습과 일자리를 연계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 ③ 장애인평생교육시설등은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역사회 내 장애인 복지시설 등과 연계하여 학습과 복지를 연계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 ④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사업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구체적 지원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13조(다른 법안 및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평생교육법」, 「평생교육 진흥 조례」를 적용한다.

2. 각 조례안의 필요성과 예시

○ 장애인평생교육을 권리로 보장

1) 필요성

- 대한민국 헌법과 교육기본법 그리고 평생교육법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을 진흥하고 장려하여야 한다고 하였지만, 장애인의 평생교육은 제자리걸음인 상황. 2014년부터 2020년까지 7년간 장애인의 교육정도는 전혀 개선되지 못하였으며, 이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이 장애인의 교육정도를 개선하는데 작용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함.
- 학령기 교육뿐만 아니라 평생교육까지 전 생애에 걸친 장애인의 교육으로부터의 소외와 배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장애인의 평생교육이 진흥과 장려의 대상을 넘어 권리로 보장되어야 함을 명시해야 함.
- 또한 장애인의 평생교육은 탈시설·자립생활이라는 장애인 정책의 패러다임에 맞춰 재가 및 시설거주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장애인 평생교육으로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의 구분을 기존 평생교육6진분류가 아닌 자립생활교육을 포함하는 장애인평생교육 7진분류로 명시해야 함.

2)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20조, 「평생교육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직업생활 및 여가·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평생교육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예시]

경기도 장애인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20조, 「평생교육법」 제5조제2항,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경기도 거주 장애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직업생활 및 여가·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평생학습권 보장**과 건강한 복지 사회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1.11.>

경상북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5조, 「장애인복지법」 제20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직업생활 및 여가·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평생학습권 보장**과 사회 참여 촉진 등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장애인 평생교육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문해교육, 학력보완교육, 직업능력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자립생활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②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제 6조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
2. 제 7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③ 장애인평생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장애인평생교육기관이란 「평생교육법」 제 2조 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중 장애인평생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2. 「장애인복지법」 제 30조의 2에 따른 장애인 가족 지원사업 수행기관, 같은 법 제 54조에 따른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같은 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같은 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 중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기관

[예시]

부산광역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조례

2. “장애인 평생교육”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문자해득(文字解得)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자립생활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지원사항 명시

1) 필요성

- 평생교육법 제 20조의 2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설치에 대해 명시하고 있지만, 예산지원에 관해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보조금법 시행령에 따라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국비 지원은 제한되어 있어 예산지원의 책무가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되어 있는데, 예산지원의 범위와 주체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지역마다 편차가 크고 혼란이 생기고 있음.
- 장애인의 평생교육 권리가 보장되기 위해선 접근가능한 시설, 관련 서비스, 4명당 1명의 교육인력이 필요하고, 이에 따른 충분한 예산지원이 필요함.
- 이에 장애인평생교육에 대한 시장·군수·구청장의 예산 지원 책무와 예산 지원 범위를 명시함으로써 장애인의 교육받을 권리가 예산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함.

2) 조례(안)

제3조(책무)

(시장·도지사, 교육감, 시·군·구청장)은 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장애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자립생활 그리고 직업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시장·도지사)는 장애인의 평생교육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평생교육진흥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예시]

제4조(지원계획)

① (시·군·구)장은 각 호의 계획을 포함하는 장애인평생교육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정책의 목표 및 시행방법
2. 장애인 접근성 증진 등 장애인 평생교육 기반 확충
3. 장애 유형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4. 발달장애인 등 중증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 지원
5.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 지원
6.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 방안
7.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정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
8.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군·구)장은 장애인평생교육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때 장애인의 성별, 연령, 장애의 유형 및 정도 등 특성을 고려하고 장애인, 장애인가족, 관계 기관 및 전문가의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예시]

공주시 장애인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지원계획 수립·시행) ① 시장은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주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목표 및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 기반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전문 진로교육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장애인 평생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

(시·군·구)장은 장애인의 평생교육을 권리로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하며, 각 호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1. 장애인 평생교육 정보제공 및 상담
2.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 개발 및 연구
3.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및 기관의 운영
5. 장애인평생교육 지원 관련 편의제공
6.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 양성·교육 및 연수 등 역량 강화
7.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
8.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예시]

군포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장애인 평생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군포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의 기본 방향 설정
2. 장애인 평생교육 기반 확충 방안
3. 장애 유형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방안
4.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5.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관계 기관 협력 방안
6.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장애인, 장애인 가족, 관련 기관·단체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정의와 설치 근거

1) 필요성

- 2019년 기준 전국 평생교육기관 4,169개 중 장애인평생교육기관은 308개로 7.4%에 불과함. 최근 5년간 전체 성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수는 212,330개인데 반해, 장애인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수는 평균 580개로, 전체 프로그램의 0.3%에 불과함. 이는 99.7%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거나, 접근할 수조차 없는 것이라는 것을 의미함. 평생교육의 수요와 지원이 늘어나는 동안 일반평생교육은 장애인을 지속적으로 외면해왔으며, 장애인의 평생교육 권리는 박탈되어 왔음.
- 학령기에 교육의 기회로부터 소외된 성인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을 지원하는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이 늘어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존재하지 않음.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함으로써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과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설치근거와 지원근거를 명시함.

2) 조례(안)

제6조(장애인평생교육시설)

① (시·군·구)장은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군·구)장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시·군·구)장은 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④ (시·군·구)장은 장애인이 제1항의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서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설의 접근 및 이용 등에 불편함이 없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예시]

광명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장애인 평생교육 시설 설치 등) ① 시장은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장애인이 제1항의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서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설의 접근 및 이용 등에 불편함이 없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공주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설치 및 지정·운영) ① 시장은「평생교육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20조의2제2항에 따라 설치된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 할 경우 관리법인 또는 기관·단체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공주시 민간위탁 기본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① (시·군·구)장은 장애인의 학력 취득·학력보완 및 학교교육에 준하는 기회 제공을 위하여 학교형태의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②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은 평생교육법 제 31조의 1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기준, 제 20조의 2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 기준을 충족한

② 제1항에 따른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은 장애인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수학습지원, 의사소통지원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보조인력을 배치할 수 있고, 관련 시설·설비 및 교재·교구 등을 둘 수 있다.

③ (시·군·구)장은

[예시]

21.4.20 [2109596] 「장애인평생교육법안」

제15조(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감은 장애인의 학력 취득·학력보완 및 학교교육에 준하는 기회 제공을 위하여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은 장애인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수학습지원, 의사소통지원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보조인력을 배치할 수 있고, 관련 시설·설비 및 교재·교구 등을 둘 수 있다.

③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시·도 교육감은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시설·설비 확충 및 인력 배치 등이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운영 기준에 미달되지 않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제8조(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에 대한 지원) (시·군·구)장은 조례 제 6조와 제7조에 따른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에 대해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해야 한다.

1. 시설·설비의 개수·보수에 필요한 경비
2. 시설·설비의 운영에 필요한 임차료
3. 시설 운영을 위한 인건비
4. 시설 운영에 필요한 급·간식비
5. 교재·교구 구입비 등 장애인 평생교육에 필요한 경비
6. 그 밖에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예시]

동해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제7조(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경비 지원) 시장은 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시설·설비의 개수·보수에 필요한 경비
2. 시설 운영을 위한 인건비
3. 교재·교구 구입비 등 장애인 평생교육에 필요한 경비
4.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제2항에 따른 교육 등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장애인 대상 교육을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서 실시하는 경우 그 교육에 필요한 경비
5. 그 밖에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제9조(장애인평생교육기관)

- ① 장애인평생교육기관은 장애인의 평생교육 기회 증진을 위하여 장애유형, 장애정도, 지역특성,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주제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 ②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장애인평생교육기관이 장애인평생교육 프로그램 또는 제17조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과정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는 장애인평생교육기관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각종 실태조사에 참여하여야 하고, 연구·개발 및 네트워크 구축 등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예시]

21.4.20 [2109596] 「장애인평생교육법안」

제16조(장애인평생교육기관의 운영) ① 장애인평생교육기관은 장애인의 평생교육 기회 증진을 위하여 장애유형, 장애정도, 지역특성,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주제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장애인평생교육기관이 장애인평생교육 프로

그럼 또는 제17조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과정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는 장애인평생교육기관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각종 실태조사에 참여하여야 하고, 연구·개발 및 네트워크 구축 등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④ 장애인평생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및 협력의 범위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 성인중증장애인학습자의 평생교육 접근을 위한 장애인평생학습관

1) 필요성

- 장애인의 평생학습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장애인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장애인 학습자에게 평생교육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함.

2) 조례(안)

제10조(시·군·구장애인평생학습관)

① 시·도교육감은 관할 구역 안의 장애인에게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장애인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하여 시·군·자치구(이하 “시·군·구”라 한다)에 시·군·구장애인평생학습관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장애인평생학습관의 설치 또는 재정적 지원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평생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군·구장애인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장애인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2. 장애인평생교육 상담
3. 장애인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4. 장애인평생교육 관련 정보의 수집·제공
5. 장애인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장애인평생교육의 기회 및 정보의 제공
6. 장애인평생교육 시설 및 기관 간의 연계체계 구축
7. 그 밖에 장애인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군·구장애인평생학습관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예시]

21.4.20 [2109596] 「장애인평생교육법안」

제13조(시·군·구장애인평생학습관) ① 시·도교육감은 관할 구역 안의 장애인에게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장애인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하여 시·군·자치구(이하 “시·군·구”라 한다)에 시·군·구장애인평생학습관을 설

치 또는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장애인평생학습관의 설치 또는 재정적 지원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평생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군·구장애인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장애인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2. 장애인평생교육 상담
3. 장애인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4. 장애인평생교육 관련 정보의 수집·제공
5. 그 밖에 장애인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군·구장애인평생학습관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장애인의 참여가 보장된 협의체 구축

1) 필요성

- 장애인평생교육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데 있어 장애인당사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함

2) 조례(안)

제11조(장애인 평생교육 운영위원회 설치)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인 평생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협의 및 자문을 위하여 장애인 평생교육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 및 발전방향 제시
2. 장애인 평생교육 추진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지역 사회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기관 및 단체 상호간 교육 프로그램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장애인 1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하며,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장애인평생교육 담당공무원
2. 장애인, 장애인가족 또는 지역주민
3. 장애인단체·시설·기관 대표 또는 관계자
4. 특수교육 또는 평생교육 전문가
5.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예시]

광명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장애인 평생교육 운영위원회 설치) 시장은 장애인 평생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협의 및 자문을 위하여 장애인 평생교육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8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 및 발전방향 제시
2. 장애인 평생교육 추진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지역 사회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기관 및 단체 상호간 교육 프로그램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평생학습사업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2. 4. 19〉

③ 당연직 위원은 시 소속공무원 중 평생학습 업무 담당 부서장, 장애인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신설 2022. 4. 19〉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장애인 1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하며,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2. 4. 19〉

1. 광명교육지원청 소속 장애인교육담당공무원
2. 장애인, 장애인가족 또는 지역주민
3. 장애인단체·시설·기관 대표 또는 관계자
4. 특수교육 또는 평생교육 전문가
5.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기간이 경과되면 해촉된 것으로 본다.〈개정 2022. 4. 19〉

⑥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2. 4. 19〉

⑦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개정 2022. 4. 19〉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관련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하여 개최한다.

② 정기회의는 분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시회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22. 4. 19〉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고용·복지와의 연계 지원

1) 필요성

- 교육으로부터의 소외와 노동시장에서 배제된 성인중증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과 자립을 위한 공공의 영역에서 교육·고용·서비스의 연계 체계를 구축함.
- 성인중증장애인이 시민참여 프로그램과 문화예술 활동 등을 통해 헌법과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명시된 장애인의 권리를 지역사회에 홍보하고, 이를 통한 지역사회 장애인 인식·제도 개선을 이끌어냄으로써 포용적이고 통합적인 지역사회를 만드는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고 이를 공공의 영역에서 노동으로 인정하여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
- 학습이 곧 노동이 될 수 있는 중증장애인 일자리 모델을 창출하여 중증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촉진함.

2) 조례(안)

제12조(고용·복지와의 연계 지원) ① 장애인평생교육시설등은 장애인의 직업 획득 및 유지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장애인평생교육시설등은 장애인의 고용 활성화 및 소득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학습과 일자리를 연계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③ 장애인평생교육시설등은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역사회 내 장애인 복지시설 등과 연계하여 학습과 복지를 연계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사업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원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참고]

21.4.20 [2109596] 「장애인평생교육법안」

제19조(고용·복지와의 연계 지원) ① 장애인평생교육시설등은 장애인의 직업 획득 및 유지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장애인평생교육시설등은 장애인의 고용 활성화 및 소득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학습과 일자리를 연계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③ 장애인평생교육시설등은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역사회 내 장애인 복지시설 등과 연계하여 학습과 복지를 연계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④ 교육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사업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⑤ 그 밖의 고용·복지와의 연계를 위한 사업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지원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